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2024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차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상세안내〉

- 007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 현황
- 008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 주요 추진일정 및 절차
- 009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 01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사업별 설명자료〉

[창작영역]

- 031 창작의과정
- 037 (문학) 창작산실
- 041 (문학) 창작주체
- 049 (시각예술) 창작산실
- 056 (시각예술) 창작주체
- 065 (공연예술) 창작산실
- 074 (공연예술) 창작주체
- 083 (다원예술) 창작산실
- 088 (다원예술) 창작주체

[정책영역]

- 095 (국제교류)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161 (국제교류) 국제예술공동기금
- 169 (일자리) 현장예술인력지원
- 179 (청년예술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 184 (청년예술가)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189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197 (향유) 신나는예술여행
- 211 (향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상세안내

1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모사업명	24년 사업예산 (A)	기존 선정액 (B)	24년 공모예산 (A-B)	지원 신청기간	
창작영역	모든 장르	창작의과정	1,260	-	1,260	2023. 10.4.(수) ~ 10.26.(목) 18:00
		소계	1,260	-	1,260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200	-	1,200	
		창작주체	1,126	980	146	
		소계	2,326	980	1,346	
	시각 예술	창작산실	2,748	-	2,748	
		창작주체	785	185	600	
		소계	3,533	185	3,348	
	공연 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6,480	200	6,280	
		창작주체	19,602	7,560	12,042	
		소계	26,082	7,760	18,322	
	다원 예술	창작산실	1,568	-	1,568	
		창작주체	900	-	900	
		소계	2,468	-	2,468	
	창작영역 소계		35,669	8,925	26,744	
정책영역	국제 교류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2,055	-	2,055	2023. 10.4.(수) ~ 10.30.(월) 18:00
		국제예술공동기금	300	-	300	
		소계	2,355	-	2,355	
	일자리	현장예술인력지원	12,497	1,242	11,255	
		소계	12,497	1,242	11,255	
	청년 예술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3,000	-	3,000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	1,000	-	1,000	
		청년예술가도약지원	2,736	-	2,736	
		소계	6,736	-	6,736	
	향유	신나는예술여행	12,849	-	12,849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980	-	980	
		소계	13,829	-	13,829	
	정책영역 소계		35,417	1,242	34,175	
	총계		71,086	10,167	60,919	

※ 기존 선정액은 22/23년도 공모사업에서 다년지원으로 선정되어 24년에 지원이 결정된 금액

2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주요 추진일정 및 절차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3.2~3월 사업별·분야별 현장업무보고에서 나온 예술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소액다건, 단년도 프로젝트 중심 지원 구조를 개선하여 창작 지원은 단계별 성장 지원체계를 갖추고, 정책적으로 건인이 필요한 영역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24년도 지원 사업은 8월에 공고문 초안을 현장에 미리 공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들었고, 9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일정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공모사업(안) 마련	
분야별 현장업무보고	2023. 2. 22(수)~3. 23(목)
사무처 지원사업 부서 워크숍 추진 및 개편 방향 수립	2023. 2월~5월
지원사업 구조 개편 방향 5월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2023. 5. 26(금)
사업별 공고문 초안 마련	2023. 6월~8월
공고문 초안 홈페이지 공개	2023. 8. 11(금)
온라인 의견 수집 및 현장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추진	2023. 8. 14(월)~8. 30(수)
24년 공모사업 주요 개선 내용 및 사업별 공고문(안) 8월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2023. 8. 25(금)
분야별 공청회 추진	2023. 9. 1(금)~9. 6(수)
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안) 9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3. 9. 22(금)
지원신청 접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고문 공개	2023. 9. 25(월)
창작영역 사업 지원 신청 접수	2023. 10. 4(수)~10. 26(목) 18:00 마감
정책영역 사업 지원 신청 접수	2023. 10. 4(수)~10. 30(월) 18:00 마감
지원심의	
사업별 1차 행정 결격 사유 파악	~2023. 11. 10(금)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접수 결과 발표	2023. 11월 중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회의 진행	2023. 11. 8(수)~12. 22(금)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3. 12. 29(금)
결과발표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23. 12. 29(금)

3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답은 현장에”

지난 2~3월 분야별·사업별 현장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사업구조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등을 현장 전문가,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현장 업무보고에서 제안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수용의 폭은 확대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사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사업에 신청해야 할지 고민
-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움
- 실연자 대상 지원사업이 확대되길 제안
- 작품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기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점 인식) 2023년 기준, 공모사업 44개, 장르별 세분화된 나열식 구조로 매우 복잡

→ (17개 사업으로 단순화) “누구나 쉽게 파악이 가능한 구조”

(문제점 인식)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기획 없이 기존 공모사업과 동일하게 운영

→ (사업특성에 따른 재구조화) “창작 지원과 정책적 건인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재구조화”

(문제점 인식) 사업목적에 따른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지원 대상과 사업의 폭이 좁음

→ (예술현장의 누구나 참여) “지원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업 확대”

○ 17개 사업으로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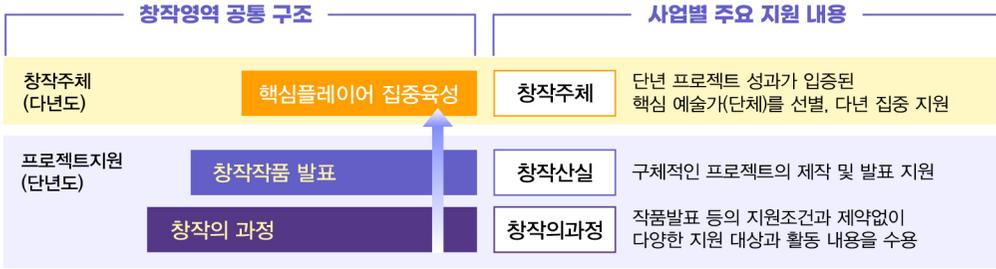
- 사업 목적과 내용, 지원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일원화
분야별 창작의과정 8개 사업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 등 8개
→ 창작의과정
예술인력지원 3개 사업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공연예술전문인력, 무대기술인턴십
→ 현장예술인력지원
청년예술가 2개 사업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사업이 아닌 플레이어 지원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나열식 사업을 결합
창작지원사업의 장르별 주요 창작자/ 매개/ 공간/ 플랫폼 지원사업은
“창작주체” 지원으로 결합 : “11개 사업 → 4개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른 재구조화

- 지원 목적에 따라 영역을 대분류, 영역별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모델 구축
- (창작영역) 세분화된 사업 경계를 허물고, 지원 목적과 대상에 따라 재편하여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장르 공통 구조 마련
- (정책영역)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여 별도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 영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업 모델 구축

창작영역	정책영역
장르별 세분화된 복잡 나열식 사업구조를 지원대상에 따라 단순화 / 단계별 지원구조로 전환	별도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영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 사업 모델 구축
창작프로젝트(과정·발표) / 창작주체 창작영역 9개 사업	국제교류 / 일자리 / 청년예술가 / 향유 정책영역 8개 사업
↓	↓
예술의 창의성 제고	예술의 다양성 증진

－ (창작영역 공통구조) 창작의과정·창작산실·창작주체



－ (정책영역 구조) 국제교류 / 일자리 / 청년예술가 / 향유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
국제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	수요자 중심 지원사업 단계 업무 편의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 체계화	특정 관객을 위한 맞춤형 예술지원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현장예술인력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어린이청소년예술지원

○ 예술 현장의 누구나 참여

- － (창작의과정) 프로젝트 준비 및 과정 단계에 대한 지원인 “창작의과정”사업을 개방형 예술지원 형태로 확장하여 작품 발표 등의 지원조건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
- － (창작주체) 기존 세분된 구조에서는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별 지원 신청 대상이 한정 되었으나, “창작주체”지원에서는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역량이 입증된 누구나 신청 가능

○ 2023년도 공모사업 대비 2024년도 공모사업 비교

2023년도 공모사업		2024년도 공모사업					
분야	사업(44개)	분야	사업(17개)	구분			
문학	창작의과정 #문학	모든 장르	[준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사전제작						
	창작의과정 #공연예술_사전연구						
공공예술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다원예술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어린이	창작의과정 #어린이청소년						
예술기술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문학	(문학창작산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문학	[발표] 창작산실	
	(문학창작산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예술기술	예술과기술 유형 ① 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다원 예술					
	예술과기술 유형 ② 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문학	[핵심 플레이어] 창작주체				
문학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문학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공연 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_음악, 전통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예술기술	예술과기술 유형 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다원 예술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_민간소공연장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국제 교류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일자리	국제예술공동기금	국제 예술	국제예술공동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청년 예술가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일자리	현장예술인력지원				
	예비예술인지원 1) 예술대학의예비예술인현장연계						
	예비예술인지원 2) 예술단체의예비예술인발굴육성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향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청년 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의발표						
공공예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협력단	향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아르고공공예술사업(지속활용형)						
	아르고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아르고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 예술현장 자율성 ·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지속 가능한 예술은 자생력이 중요
- 연간 단위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긴 호흡으로 창작을 지원받아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 다년지원 사업의 확대 및 사업수행의 시기적 유연성 필요
- 사업의 결과물을 오픈 소스로 공개, 한국 예술 현장의 성과로 자원화, 자산화 필요
- 10년 이상 지속되는 민간 공연예술제는 다년간 지원이 필요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점 인식) 기존 소액다건, 단년도 프로젝트 중심 지원 구조 개선 필요

→ (지원 사업 관점의 전환) “사업이 아닌 플레이어에 주목”,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문제점 인식) 프로젝트 종료 후 사양되는 결과물

→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지원 효과는 높이고, 성과는 모두의 자산으로 환원”

○ 지원 사업 관점의 전환 :

프로젝트 지원에서 주체 지원으로, 단년도 지원에서 중장기 지원으로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예술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년간 자율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창작주체” 사업 신설
- 현장에서 긴 시간 창작 역량을 축적해온 “예술가, 단체, 매개, 플랫폼 등 플레이어” 그 자체를 지원

프로젝트 지원	예술가,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 기획서 중심의 심의, 단년 지원
창작주체 지원	예술가, 단체 등 예술생태계 내 활동하는 “핵심 플레이어”를 지원, 활동 이력 중심의 심의, 다년 지원

- (공모주기) 현장의 기회 확대 및 신규 주체 발굴을 위해 공모 주기 개선
(기존) 중장기 사업은 3년마다 공모 → (개선) 매년 공모를 시행

○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

지원 효과는 높이고 성과는 예술 현장 모두의 자산으로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외 예술가에게 필요한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성과의 순환) 지원선정자들의 활동내용을 예술현장에 공유, 예술현장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보조사업 운영 방침 강화로 지원사업 책임성·신뢰성 제고

예술현장과 우리는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심의위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미정산·부정수급 원천 차단
- 보조사업 책임성 제고 및 지원 기회 확대 필요
- 지원사업 참여자의 저작권 보호 제도 마련

○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 강화

- 심의위원 후보단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 :
심의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전원 신규 모집·선정으로 후보단 재구성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한 후보단 3년 임기제 도입
- 불공정·불성실 심의위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결과 반영으로 아웃제 도입

○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 (저작권 보호)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은 부적격 처리
- (의무불성실 제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사안에 따라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지원 선정 원천 차단 및 지원심의 감점 적용

지원신청 및 선정 차단 (2024년 지원신청부터)	(미정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심의감점 (2025년 지원심의를부터)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보조사업자

- (다중선정 제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제한

다중 선정 제한	(3건까지)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창작)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창작의과정·창작산실 / 창작주체 사업 중 선택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 불가

- (평가·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조사업 의무 이행 여부는 전수 서면 평가 실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 시 반영

4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1. 지원 신청 자격 안내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 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 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 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 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 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유형을 포함)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 **[미정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불공정 행위]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2022년 5월 제정)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기타]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용자 지원 사업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
 -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 항목 ‘최하점’ 점수 부여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으로 인한 부적격자는 지원신청이 불가
 - * 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이행 완료 시 신청 가능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 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기타 각 사업별로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바. 지원 심의 감점 적용 안내

- 아래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모든 지원 신청 사업의 지원 심의 시 감점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정해진 정산 기한(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보조사업자

사. 사업 중복 선정 및 보조사업자 다중 선정 제한

[동일한 내용 사업 중복 선정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수급(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선정된 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사업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불가]

-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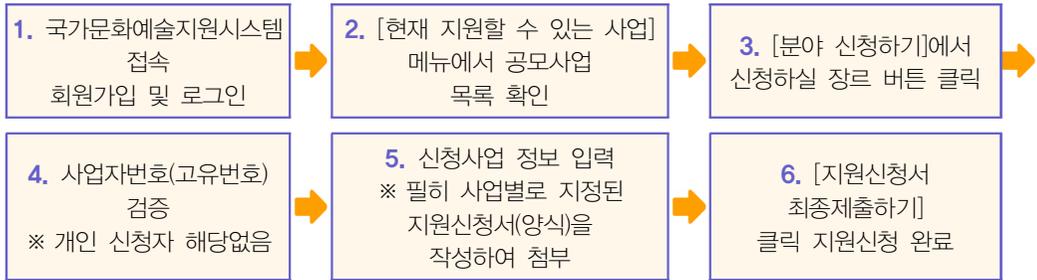
아. 공통 사항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청렴이행확인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성희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확인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2. 지원신청 방법 및 결과발표 안내

가.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서면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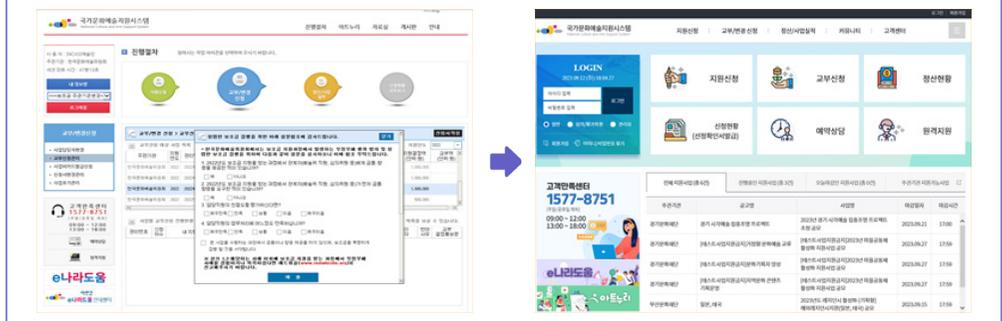
○ 지원신청 유의사항

– 마감일 정해진 시간까지 지원신청서 제출 완료 필수

- 마감일,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 방지를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는 지원신청서 내용 수정 불가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제출회수 후 신청서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 18:00 이전까지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제출완료 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 제출 가능 (17:0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18:00까지 제출해야 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최신 웹 트렌드 UI/UX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인성 향상
- 공모사업 지원신청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및 웹 브라우저 지원으로 접근성 확보



나.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 발표시기

-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결과발표 진행
* 12월 말 발표 예정
- 2차 이상 지원심의회가 이뤄지는 사업의 중간 심의 결과 발표는 별도 의결 없이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가능
※ 결과 발표 시, NCAS 회원가입 당시 대표번호로 지원신청자 전원 문자 안내 (세부결과는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발표내용

- 2024년도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 2024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
- 향후 진행사항 및 사업담당자 안내
- 지원심의옴부즈만(이의신청제도 안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 ① 위원장은 심의에 대한 정보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에 한해 당사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총평
 2. 지원대상인(단체) 및 지원사업별 지원결정금액
 3.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 의견은 위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사업에 따라 최종 심의결과 발표 전 중간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에는 다음 차수 심의대상단체(개인) 내역만 공개 함.

다.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도명 : 지원심의옴부즈만

○ 신청권자 :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인 (단체·개인)

○ 신청기한 :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내 지원심의옴부즈만 게시판으로 신청
* 사이트 주소(URL) : <https://www.arko.or.kr/content/818>

○ 이의신청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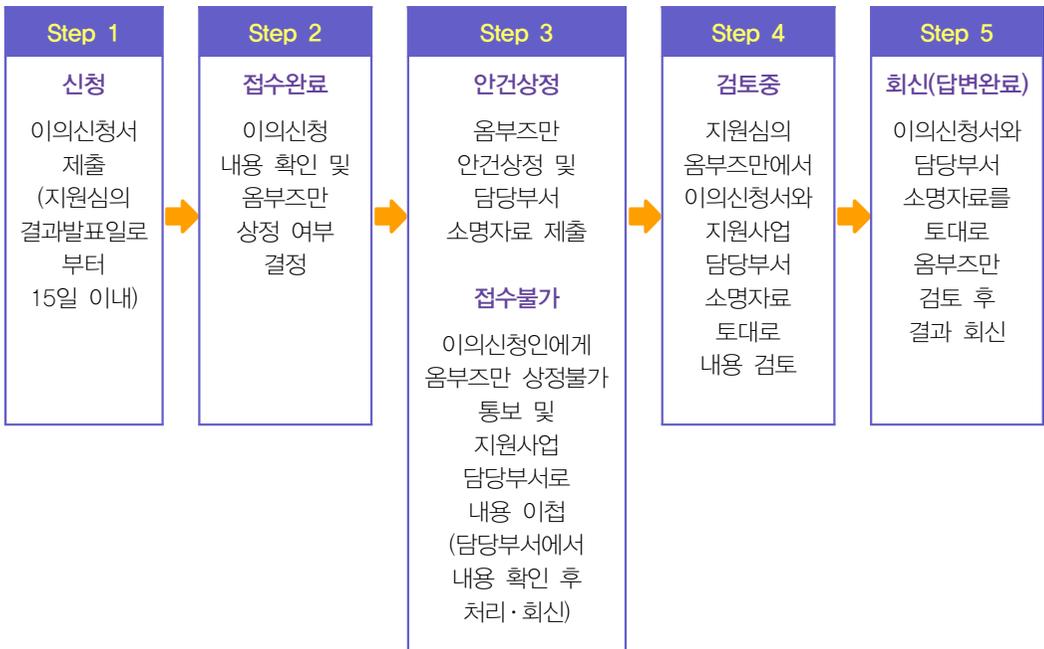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단순 심의결과 또는 탈락사유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로 문의
이의신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서 접수 후 이의 내용 옴부즈만 상정 여부 검토
* (감사실) 1차 조사 → 심의안건 상정 또는 접수 불가 답변 (문서 통보)
- 이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소명 자료 제출 요청 및 옴부즈만 위원 소집·안건 심의 (※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감사, 조사 등 지시)
- 옴부즈만의 검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옴부즈만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업무 처리 절차



3.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

○ e나라도움 사용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www.gosims.go.kr)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

- (통장개설 및 OTP 발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OTP 발급 필요.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 *(현금 인출 불가)
- (회계검증 의무)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 내역 일체를 외부 회계법인(*사업별 위원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회계검증수수료 보조금 편성 가능 및 단가는 26p 참조
- (회계감사 의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을 포함한 국가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 (정보공시 의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을 포함한 국가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차년도 4월 이내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정보공시를 이행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내용 반드시 준수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의무 가입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계약이 필요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참여 횡수와 계약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는 계약 체결을 필수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필수 이수) 예술가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조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확인서 또는 교육 수료증을 정산 시점까지 제출

-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 결정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예술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 제재 및 환수 조치

–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지원 제재 및 보조금 환수,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사업 미 수행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 지원 결정된 내용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 (미정산) 정해진 기한 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 (부정수급) 보조금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정산·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미제출) 지원금을 받고 실적보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보조금 교부 불가
- (지연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제출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강제징수)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4.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 집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의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 (자산취득비, 단체운영성 경비 등)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항목별 단가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사업별 편성 가능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을 참고하여 편성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5. 직급보조비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참여자 사례비 - 영유아돌봄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임차료 (07)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여비 (220)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국외여비 (02)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회의진행비 등

[항목별 단가 기준]

○ 회계검증수수료

-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

사업규모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90,000원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541,000원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86,000원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31,000원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76,000원
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2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08,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57,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988,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32,000원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181,000원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1,240,000원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302,000원
8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367,000원
9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35,000원

○ 영유아돌봄비

- 만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하여 참여인력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
- *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예술인고용보험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해야하므로,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필수
- 월 평균 보수 × 1.6%
(0.8%는 사업자부담분으로 별도 편성, 0.8%는 예술인부담분으로 사례비에 포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산 편성
<http://kawf.kr/allMenu/emplnsNormalCal.do>

○ 여비 편성 가능 단가 안내

「공무원 여비규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

- 운임비

구분	철도	버스	선박	항공
편성가능한도	일반실, 실비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

- 숙박비 : 실비, 지역에 따른 상한액

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편성가능한도	100,000원	80,000원	70,000원

○ 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

구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편성가능한도	1인당 5,000원	1인당 20,000원

5. e나라도움 사용 안내

○ <e나라도움> 안내

국고 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www.gosims.go.kr)

○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절차

- ① 지원 사업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선정된 사업을 <e나라도움> 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③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집행
- ④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증, 정산보고서 생성 (실적보고서 첨부)
- ⑤ 보조금 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정해진 기한 내 <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사용 절차

구분	신청접수(NCAS)	결과발표 후(e나라도움)
이용단계	지원신청 → 결과확인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사업추진 → 정산
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문의처	[전화] 1577-8751 (NCAS 콜센터) [온라인] www.ncas.or.kr	[전화] 1670-9595 (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 www.gosims.go.kr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예술가의집 1층에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면서비스, 원격지원 및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1층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운영 제외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 12시 ~ 2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원격지원, 유선 상담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매뉴얼 배포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창작의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창작의과정	2023. 10.4.(수)~10.26.(목) 18:00 마감	문학	061-900-2206	31
		시각예술	061-900-2233	
		연극·창작뮤지컬	061-900-2283	
		무용·음악·전통예술	061-900-2237	
		다원예술(탈장르·문화일반 포함)	061-900-2167	

창작의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발표 외 다양한 창작 활동을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별, 장르별 “창작의과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분야별·장르별로 각개 지원 및 운영하던 “창작의과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각 장르,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던 지원내용과 대상, 지원금 규모를 통일하고 지원사업 내에서 수용가능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내용의 폭은 더욱 넓혔습니다.

기존 지원사업별로 요구하는 정형화된 틀에 갇힌 결과물이 아닌,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다양한 활동을 열린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획 활동을 실현해볼 수 있는 지원금 외에도 동료 예술가를 만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작품 창·제작 및 발표” 등의 지원조건 및 제약 없이,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동시대 예술현장의 고민과 생각이 가장 많이 담길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 분야의 실험성 및 역동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및 활동 활성화
- 지원조건 및 제약이 없는 개방형 지원 사업 운영으로 예술 현장의 동시대성 뒷받침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개방형 예술지원) 작품 발표 N회 등 지원조건 및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새로운 작품 창출이 지원 사업의 목표가 아니므로 지원 사업에서 정해진 활동 내용(작품 발표 등)은 없고 신청자가 자유롭게 활동 계획을 수립

(지원신청자) 작품 제작 및 발표 외 다양한 아이디어, 리서치, 워크숍 등의 활동을 기획하여 제출

(지원선정자) 자유 기획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활동 결과물 제출

(예술위원회) 활동 비용 지원 및 네트워킹, 교육, 성과공유회 등 프로그램 제공

(활동결과물) 활동 결과물은 리포트 형태로 제출하고 성과공유회에 발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리포트 형태의 결과물 외 동료 예술가와 공유하고 싶은 글, 이미지, 영상 등 어느 형태든 추가로 제출 가능

- 신청대상 :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프로젝트 그룹(팀)은 구성원 대표가 개인으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초예술 분야 실험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다양한 활동 경비 지원

지원 가능한 활동 예시

- 창작 및 비평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소재발굴 취재, 리서치, 인터뷰, 아카이빙 등)
-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류 활동(워크숍, 리서치 트립 등)
- 사전제작 및 아이디어 초기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포트폴리오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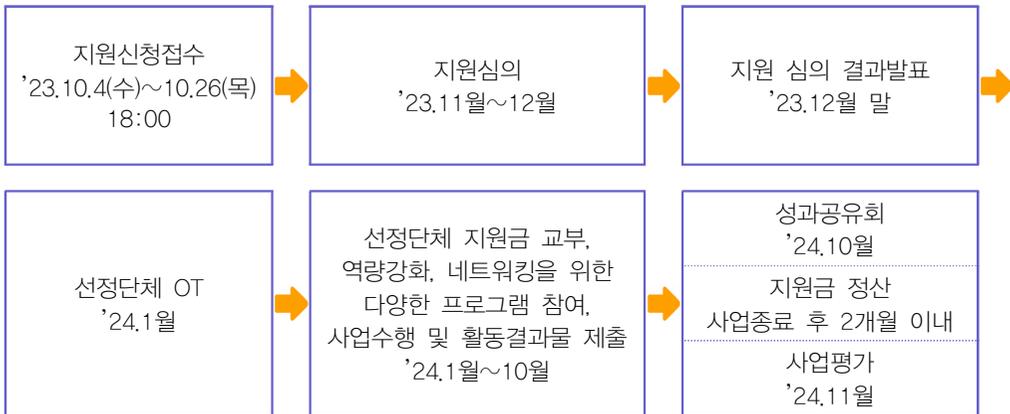
- 2024년 총 지원예산 : 12.6억
- 지원규모 :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신청
- ※ 예술현장의 역동성과 실험성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 정형화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없음

유형1 / 5백만원	유형2 / 1천만원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등	사전제작 및 아이디어 초기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OT, 성과공유회 추진,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홈페이지를 통한 각 분야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향후 지원 심의에 반영
-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22p) 확인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 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는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등 기획의도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활동 계획의 충실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계획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일정, 참여 인력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소요 예산의 편성과 내용은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활동 계획의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프로젝트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후속 창작활동 계획은 본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며 실현 가능한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창작의과정 지원신청서(양식 한글파일)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창작의과정 예산집행계획서(양식 엑셀파일)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6 문의처(융합예술부) * 중점활동 분야별 안내

- 문학 분야 : 061-900-2206
 - 시각예술 분야 : 061-900-2233
 - 공연예술 분야
 - 연극, 창작뮤지컬 분야 : 061-900-2283
 -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 061-900-2237
 - 다원예술(탈장르·문화일반 포함) 분야 : 061-900-216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ARTS COUNCIL KOREA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문학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324	37
	발표	2024.3월 접수 예정	061-900-2328	
문학 창작주체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326	41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우수 문학 작품의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창작의 기반을 다져 온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2022년부터 미발표 우수작품의 발표와 선순환을 돕고자 발표지원 유형을 새롭게 열어 현재 발간지원과 발표지원 두 유형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작품집 발간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와 동시 지원신청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발간지원은 올해 하반기(23.10월 접수)에, 발표지원은 내년 상반기(24.3월 접수)에 각각 분리하여 공모하는 방향으로 공모시기를 개선했습니다.

2024년 발간을 준비하는 우수 작품집과 기간 공개되지 못한 우수한 미발표작이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통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1. 사업목적

- (발간) 우수 문학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한국 문학의 예술적 역량 확대에 기여
- (발표) 미발표 문학 작품 발굴 및 발표 기회 확대로 문학계 창작활동 활성화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유형 ① 발간지원]

2024년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완성된 원고 전체분량을 제출·심사하며, 필히 연내 작품집 발간 완료 후 성과를 공유

[유형 ② 발표지원]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우수 미발표작을 심의·선정하여 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1년간)하여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지원

구분	유형① 발간지원	유형② 발표지원
신청대상	2024년에 발간이 완료되는 작품집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미발표 작품
세부자격기준	신청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시작**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	신청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지원	창작지원금 및 온라인 발표 기회 지원
2024년 총 지원예산	6억원	6억원
지원규모	1인당 1천만원 정액지원	1인당 200만원 정액지원

- * 신청분야(7대분야) : 시·시조, 소설, 동시, 동화(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 **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 : 신춘문에 당선, 신인문학상수상, 문예지 등의 문예매체 작품발표,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본(작품집) 출간 등 공식적인 창작활동 시작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상연도 인정)
- *** 3년 이상 경과의 기준 : 공고문 게시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 경과

○ 신청 부적격 요건

-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15p)]에서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① 발간지원] 동일 작품집이 이미 발간한 경우, 최근 3년(2021-2023) 동일·유관사업* 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단, 2024년도 유관사업에 동일 작품집으로 선정 될 경우 택일)
- [유형② 발표지원] 제출 작품이 공개·발표 되었거나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 동일·유관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창작집 발간지원사업

○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에 대한 집행정산 불필요
- [유형① 발간지원의 경우] 작품집 발간시 서지정보 부분에 위원회에서 지정한 문구 삽입 필수, 발간 후 위원회로 작품집 제출 필수
- [유형② 발표지원의 경우] 미발표작은 온라인 발표기한이 종료되는 시점(1년간 공개)까지 유료 게재 등 제한(개인 작품집에 작품 수록은 가능)
- 각 유형별 성과에 대해 계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공유 예정이며, 성과 보고가 기간내 완료 되지 않거나 공유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전체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전체일정

연도	2023			2024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발간 지원	공고 및 지원신청 (10.4.~10.26. 18:00)		지원심의(1·2차) 및 결과발표(2월말)		OT 및 지원금 지급		작품집 발간(출간) 및 성과 공유							
발표 지원				공고 및 지원신청 (3월예정)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6월말)		OT, 계약체결 및 발표준비		온라인 작품 발표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작품 원고 및 제출서류 심의

- [유형① 발간지원의 경우] 작품 심의(1차) → 발간계획 등 제출서류 및 작품원고 종합심의(2차)
- [유형② 발표지원의 경우] 작품원고 무기명(블라인드)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유형① 발간지원] 1차 심의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유형① 발간지원] 2차 심의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우수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신청 작가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참신한 소재 개발,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을 가진 작가인가?
선정 후 기대되는 발간 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선정 후 출간계약서류가 충실한가? • 제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유형② 발표지원]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창작활동 증빙자료 첨부)
 - <필수> 작품 원고
- ※ 유형① 발간지원에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출간계약서 제출 필수
-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 제출 작품원고 분량

[유형① 발간지원]

- 발간예정作品集 1권 분량으로 탈고한 원고 1부(매수 제한 없음)

[유형② 발표지원]

- 미발표 작품으로 신청분야별 기준에 따른 분량 제출(분량초과·미달 시 결격처리)

신청분야	시·시조	소설	동시	동화	수필	평론	희곡
제출편수	7편	(단편)1편 (장편)일부	7편	(단편)2편 (장편)1편	3편	2편	1편

4. 문의처

○ 문학지원부 061-900-2324, 2328 / jylee@arko.or.kr, whdvlf72@arko.or.kr

문학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 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사업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한계적 구조에 기인한 여러 제한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 사업 개편을 고민했습니다.

“문학 창작주체”는 예술가(개인) 및 예술단체의 역량 증대를 위한 안정적 다년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을 신규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긴 시간 창작 역량을 축적해온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에 주목하겠습니다. 나아가 문학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현장의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활동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창작주체 문학” 분야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
- 문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 주체의 발굴 및 육성 등 문학 분야의 안정적 여건 조성 (3개년 지원)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1회 이상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 기준
- 문학 증진을 위한 활동 분야 전반을 지원(창작 및 기획 지원, 매체 발간, 레지던시, 축제, 공간운영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를 지원

○ 신청대상 : 문학계 분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가, 단체

창작자, 기획자, 공간, 축제 조직, 매체, 플랫폼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개인 또는 단체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자

○ 세부 자격기준 : 신청 사업 분야 활동 이력이 5년 이상이며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이력이 1회 이상인 예술가, 단체 (증빙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신청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를 지원
-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1회 이상 공공분야(문예기금, 지자체 보조금 등 국고 예산)에서의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 기준
- 문학 증진을 위한 활동 분야 전반을 지원(창작 및 기획 지원, 매체 발간, 레지던시, 축제, 공간운영 등)
 - * 기존 문예지발간지원·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과 동일·유사할 경우 본 사업 유형으로 신청 가능
 - ** 2023년 현재 문예진흥기금 문학 분야 다년 유형 사업에 참여 중인 단체의 경우 수행 중인 다년 유형 사업의 종료 시까지 동일 사업 유형으로 신청 불가
(예시) 2023년 현재 기존 다년 유형(문예지발간지원사업 또는 문학집필공간)사업 수행 중으로 2024년까지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2024년 문학 창작주체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은 신청 불가
 - *** 2024년 사업 선정 시 사업이 진행되는 2024~2026년 사이의 기간에는 문학 창작주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예시) 2024년 문학 창작주체에 공간운영사업으로 선정 시 2025년과 2026년에는 문학 창작주체 신청 불가

○ 2024년 총 지원예산 : 146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Band1	Band2	Band3
연간지원액	1천~2천 미만	2천~3천 미만	3천만원 이상
선정예상건수	5건 이내	3건 이내	2건 이내
자부담 비율	10% 이상		

- ※ 위 선정 예상 건수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선정 건수는 다를 수 있음
- ※ 2024년도 창작주체 사업에 선정되어 3년의 지원 사업 수행 이후 2027년도 창작주체 사업 선정 시, 자부담 비율 상향(5%) 예정
(예시 : 2024-2026 사업 수행 및 종료 후 2027년 창작주체 사업 선정 시 자부담 비율은 15%)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연중 키포프·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를 통한 각 분야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추진, 평가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단체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단체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자·단체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과거 성과들이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신청자·단체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 신청자·단체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신청자·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단체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 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청자·단체의 3년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단체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기획, 편집, 원고료, 비평 등 제출한 사업 관련 사례비에 한정)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 * 구 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경우 원고료 항목이 지원신청액의 80% 이상 편성되어야 함
- ** 구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지원신청액의 40% 이내로 편성되어야 함
- *** 업무추진비의 경우 자부담 항목으로만 편성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공분야 문화예술기관의 문학 분야 창작지원사업 수행 관련 1개 사업의 실적 보고서(총 1부)
 - * 단체의 자체적 판단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실적보고서 1부 제출
 - ** 2개 이상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 임의 1개의 실적보고서를 심의 대상 자료로 사용
 - <필수> 신청자의 신청 분야 활동 이력(5년) 소개 및 증빙자료 1부(지원신청서 내 첨부 문서 참조, 10page 이내)
 - (선택사항) 동영상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 동영상을 링크가 아닌 파일로 제출 시, 심의자료로 활용 불가함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 061-900-2326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시각예술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시각예술 창작산실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345	49
시각예술 창작주체		061-900-2347	56

시각예술 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단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로이 기획하실 수 있도록, 창작 형태를 제한하던 기존 사업 틀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유형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모든 예술주체(작가, 기획자, 비평가, 공간, 매체 등)가 <시각예술 창작산실>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범위에서 전시, 출판, 행사, 기타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세세하게 분류된 지원 사업 틀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 본 사업은 단기간(1년)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각종 창작활동과 프로젝트를 다년간(3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공간 포함)는 <창작주체> 지원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상세)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시각예술창작산실_우수전시 시각예술창작산실_비평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시각예술창작산실_공간	유형 통합
신청주체	사업 유형별로 주체 구분	유형에 따른 주체 구분 없음 * 단, 전시의 경우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를 기획한 실적이 있어야 함
프로젝트 형태	사업 유형별로 제한	제약 없음 * 상세 예시는 '지원내용' 항목 참조
지원액 규모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지원규모 선택	
	구분	지원규모
	우수전시	5천만원/1억원 정액지원
	비평지원	5백만원~1천5백만원
	중견작가프로모션	3천만원 정액지원
공간지원	2천만원~5천만원	프로젝트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규모 선택
구분	지원규모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전시, 출판, 행사 등) 구현을 지원하여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2024년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다양한 창작, 매개, 향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예술가, 단체 및 공간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수행 후 프로젝트 결과물은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발표

- **신청대상** :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개인 및 단체 : 작가, 기획자, 비평가, 매체 등
- 공간 : 사립미술관, 민간전시전문공간(상업공간 제외) 및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특성화 공간 운영자(공공 소유 공간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자)

○ 자격기준

- 개인 및 단체 :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예술단체
- 공간 : 2023년 9월 25일 현재까지 1년 이상 해당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자 혹은 민간 위탁운영자(지자체 등 공공 소유 공간의 경우)
- ※ 전시 프로젝트는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및 단체, 공간만 신청 가능
-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 ’22~’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며 ’24년도 창작산실_시각예술 사업은 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
- 공간 프로젝트(전시전문공간/ 특성화공간 구분)
- 프로젝트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신청가능 프로젝트 유형(예시)〉 ※ 복수 구성 가능

- 전시 (예시: 개인전, 주제 기획전, 대중개방 야외 전시 등)
- 출판 (□단행본/ □간행물) (예시: 작가 프로필 도록, 비평가 앤솔로지, 온/오프라인 간행물 등)
- 행사 (예시: 비평 심포지움, 야외 퍼포먼스, 관객 참여 프로젝트 등)
- 특성화 공간 운영 프로젝트(예시: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 기타 (예시: 사회적 의제를 다룬 공공예술 사업, 다양한 주체간(작가, 기획자, 전시공간, 레지던시 등) 창작 교류 프로그램, 한국작가 프로모션 기획, 비평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큐레이터 연합 공동 워크숍 등)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③ 국외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 행사 등 프로젝트
- ④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⑤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2,748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6건 내외	4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8건 내외	8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4건 내외	7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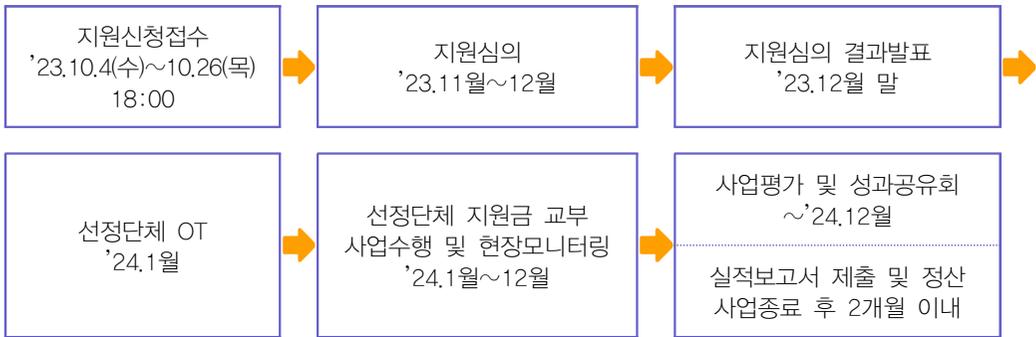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위탁운영 공공 공간(지자체 소유 등)의 경우, 지방비, 공공기관 예산 매칭 권장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프로젝트 실행 후 성과공유회 추진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구분	지원 규모	심의방법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서류심의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동	공간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역량 (40%)	<p>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예술활동 이력 및 활동 결과 내용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운영 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30%)	<p>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활동 계획은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운영 목표(비전)가 분명하고, 향후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에 부합하며 지원 대상에 적합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한 프로젝트가 공간성격에 적합한가?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이인가?
사업의 수월성, 책임성 및 기대효과 (30%)	<p>신청한 프로젝트가 주제적 시의성, 명확성, 창작작품의 수월성 및 공공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예술적 파급력과 기대효과가 탁월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프로젝트 주제가 시의성이 있으며 명확한가? (작품) 우수한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파급력과 기대효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최근 2년간 (2022~2023년도) 창작의과정#시각예술 사업 선정자는 해당 주제로 '24년도 <창작산실_시각예술>을 통해 전시 실현 내용으로 지원신청 시, 1차 서류 심의 면제 (단, 2차 심의가 없는 '유형① 소규모(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서류심의 진행)

※ 기존 <창작산실_공간지원> 사업 수행 단체의 경우 심의 시 사업 평가결과 25% 반영

구분		심의 반영 비율
2023년 공간지원사업 수행 공간	'23년도 단년도 선정	'23년도 평가결과(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2~'23년도 다년도 선정	'22~'23년도 연도별 평가결과 평균(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4년도 신규 신청 공간		'24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분야 선택 시 “시각예술”로 신청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 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문의처

○ 시각예술부 : 061-900-2345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단, '23년도에 '23-'24 연속 지원으로 선정된 공간의 경우, '24년도 창작산실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24년도 창작주체 사업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 예술현장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시각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시각예술분야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3개년 지원)
 -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1회 이상 공공기관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하고,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시각예술분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개인 또는 단체(공간 포함)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자

○ 자격기준 :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시각예술분야 사업수행(혹은 공간운영) 이력이 5년 이상인 개인, 단체 및 공간

※ 대표 실적보고서 1건 제출 의무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 단, 매년 말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항목	창작 준비활동, 프로젝트 제작 및 결과물 향유·확산, 국제교류 활동, 공간운영, 공공예술 활동 등			
상세 지원항목 (※ 예시)	[3개년 창작 활동 및 프로젝트]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창작 활동	□ 조사연구활동(자문/자료 수집·정리)		
			□ 레지던시 □리서치 트립	
		□ 작품 제작·변형·보존·수복		
		□ 아카이빙 및 포트폴리오 제작		
	단기 프로젝트	□ 전시	□ 전시	□ 출판
		□ 행사(아카데미 운영 등)	□ 출판	□ 행사(캠페인, 퍼포먼스 등)
		□ 행사(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중기 프로젝트	준비	발표	유통·확산
□ 레지던시/리서치 트립		□ 전시	□ 해외 유력 매개자 (큐레이터, 이론가) 협력 프로모션 기획 (스튜디오 방문, 전시, 출판 등)	
□ 원고 수집 및 아카이빙		□ 출판		
□ 워크숍		□ 행사		
	□ 작품 제작·변형			
단체 및 공간 운영	□ 인력 운영 □ 전시 공간 운영 □ 작가 스튜디오 운영			
※ 복수의 중·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연도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수행 가능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③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④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785백만원

(기존 '23~'24년도 연속 수행 선정 공간 지원액 185백만원+'24년도 신규 선정 예산 600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건 내외	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건 내외	3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건 내외	2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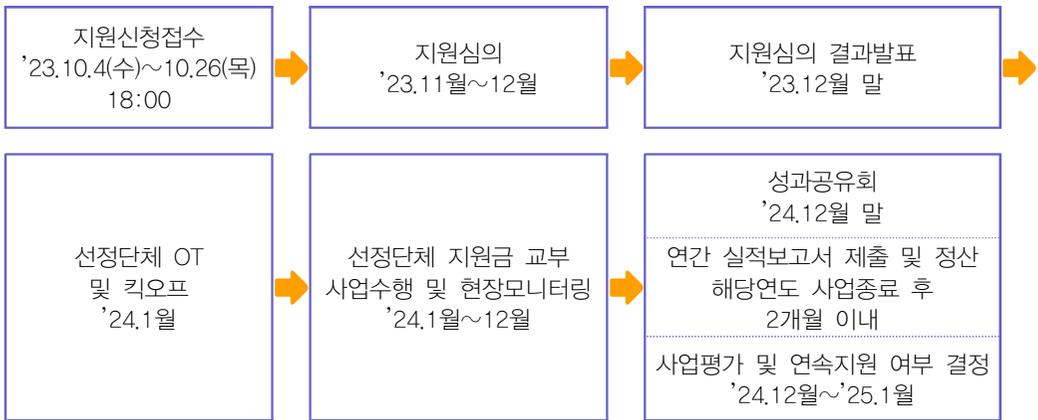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 연간 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금액은 향후 3년간('24~'26년) 매년 동일 금액으로 지원
- ※ 3년의 지원사업 수행('24~'26년) 이후 연속 선정 시에는 자부담 비율 증대 예정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연간 킥오프·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 예정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통	공간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자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신청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자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현장의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급력) 신청자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 확보 여부 (기대효과) 신청자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공공성, 개방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전 자료(①~③) 필수 제출)

①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② (필수)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수행 대표 실적보고서 1부

※ 여러 개의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대표 실적 1부만 제출

③ (필수) 최근 5개년 이상 신청자의 활동 이력(공간일 경우, 공간운영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 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 단체 및 공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월세))는 지원신청액의 50% 이상 편성 불가
-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문의처

- 시각예술부 : 061-900-234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단, '23년도에 '23-'24 연속 지원으로 선정된 공간의 경우, '24년도 창작산실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24년도 창작주체 사업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ARTS COUNCIL KOREA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공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2023.10.4.(수) ~ 10.26.(목) 18:00 마감	연극	02-3668-0025	65	
		창작뮤지컬	02-3668-0066		
		무용·전통예술	02-3668-0067		
		음악·창작오페라	02-3668-0068		
공연예술 창작주체	2023.10.4.(수) ~ 10.26.(목) 18:00 마감	연극·뮤지컬	창작단체	061-900-2194 061-900-2208	74
			창작공간	061-900-2197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단체	061-900-2202 061-900-2192	
			창작공간	061-900-2198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단계별 심의의 과정(서류 → 인터뷰 → 실연 심의)으로 진행하며, 실연심의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본공연 제작비 및 통합홍보, 온라인 중계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동시대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우수한 신작 발굴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신작 제작 지원
단계별 심의의 과정(서류 → 인터뷰 → 실연 심의)을 진행하며, 실연심의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본공연 제작비 및 통합홍보, 온라인 중계 등을 지원

○ 신청대상

-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공연예술 단체
- ※ 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 신청 가능
- ※ 유의사항

① 음악분야 창·제작 유형

- 다양한 형태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예시) 실험 및 전자음악, 실내악, 관현악, 합창곡, 음악극 등
 - * 서양악기, 국악기, 전자악기 등 다양한 편성 및 규모 가능
 - * 기존 곡을 인용한 재창작 가능(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에 한함)
- 전체 공연의 1/3 이상이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공연

②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p>①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저작권 분쇄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p> <p>② 유료로 공연화 및 발표된 작품(온라인 포함) ※ 온라인 플랫폼(OTT, 유튜브, 음원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송출 및 유통된 작품 포함</p> <p>③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 및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지역문화재단 등)</p> <p>④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일정이 있는 동일 및 유사한 유료작품(안무 및 연출 요소 등)</p> <p>⑤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p> <p>⑥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작품 (단순 각색, 번역, 편곡,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 원형의 모티프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은 가능</p> <p>⑦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일정이 있는 동일 및 유사한 유료작품(안무 및 연출 요소 등)</p> <p>⑧ 국악 관현악작품</p> <p>⑨ 정기연주회, 발표회 등 공연예술 단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p> <p>⑩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p>

○ 지원내용

실연심의	본공연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실연심의 제작 비용 정액 지원	실연심을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제작비 등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필수 회차 - (연극) 중·대극장 8회, 소극장 12회 - (창작뮤지컬) 소·중·대극장 20회 -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중·대극장 3회, 소극장 4회

○ 진행 방식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대상	1,2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실연심의 대상 작품	3차 실연심을 통해 <올해의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초연 원작)
일정	2024년 3월~4월 중 개최 예정 - 선정 이후 세부 가이드라인 등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안내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1~2월 중 공연 - 공연 일정은 협의를 통해 결정, 선정자(단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장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연장 (연극, 창작뮤지컬) : CJ아지트 (대학로)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마포아트센터 선정단체 대상 발표 순서 추첨 ※ 세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및 총 무대감독과 사전협의 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공연장 - (연극, 무용) :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 외부 대관 희망 시 장소, 일정 협의 필수 -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외부 공연장 대관하여 진행 ※ 일정 협의 필수
평가 및 모니터링	- 심의위원회, 관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공개, 평가 예정	- 심의위원회, 일반관객 리뷰단 모니터링 예정
기타	- 포트폴리오, 본공연 예산집행계획 등 추가 제출 필수 ※ 추후 오리엔테이션 개최시 세부 안내	

－ 실연심의 상세안내

분야	방식	장소	일정	소요시간 (인터미션 없음)	상세 내용
연극	낭독	CJ 아지트 (대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 '24.3.19(화)~ 3.22(금) • (실연심의) '24.3.26(화)~ 3.2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60분 • 인터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낭독공연 시 20분 내외 장면구성(배우의 이동과 동선)이 포함되어야 함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 뮤지컬	낭독	CJ 아지트 (대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 '24.3.6(수)~ 3.9(토) • (실연심의) '24.3.12(화)~ 3.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80분 • 인터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5인조 이내 라이브 반주(지휘자 1인 별도 참여 가능) - MR 사용 불가, 전자 드럼 및 키보드 기본 제공 및 위치 고정 • 무대 내 이동 및 움직임 불가, 배우 등퇴장만 가능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무용	실연	마포 아트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 '24.4.6(토)~ 4.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분야	방식	장소	일정	소요시간 (인터미션 없음)	상세 내용
무용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실연심의) '24.4.11(목)~ 4.13(토)	• 인터뷰 15분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음악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리허설) '24.4.14(일)~ 4.16(화) • (실연심의) '24.4.17(수)~ 4.18(목)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창작곡 5분 이상 3-4곡, 20분 1곡 등 자유롭게 구성, 대편성일 경우, 소규모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 가능(편곡 악보 제출) •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 오페라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리허설) '24.4.2(화)~ 4.3(수) • (실연심의) '24.4.4(목)~ 4.5(금)	• 실연 3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 (오케스트라 연주단체) 20인조 규모**로 예술위가 별도 지원 예정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 (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 2024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오페라분야 선정단체는 2023년도 대본공모(오페라)지원 사업 선정 단체(3개 단체)와 실연심의 경합
전통 예술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리허설) '24.4.19(금)~ 4.20(토) • (실연심의) '24.4.23(화)~ 4.24(수)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 (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 실연심의 세부 추진사항(일정, 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창작오페라 분야 오케스트라 구성(안)**

- 1st 바이올린 2명, 2nd 바이올린 2명, 비올라 2명, 첼로 1명, 콘트라베이스 1명
- 플루트 1명, 오보에 1명, 클라리넷 1명, 베이스 클라리넷 1명, 바순 1명
- 호른 1명, 트럼펫 1명, 트롬본 1명, 팀파니 1명, 타악기(1) 1명, 타악기(2) 1명

* 지휘자는 실연심의 참여단체에서 별도 섭외하여 참여

** 제공 악기 이외에 추가되는 악기 및 연주자는 최대 5개로 실연심의 참여단체에서 별도 섭외 및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규모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연극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2억2천만원
창작뮤지컬	정액 3천만원	최대 2억5천만원
무용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음악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창작오페라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2억5천만원
전통예술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	자부담 없음	자부담 10% 이상

※ 지원심의를 통해 분야별 사업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산편성 항목

세목	실연심의	본공연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	• 사례비	① 참여예술가 사례비 필수 편성 ②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있는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선정이후, 총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 실연심의 제작비	• 공연 제작비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참조, 편성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 영유아 돌봄비	• 영유아 돌봄비 • 홍보비	
임차료	• 연습실 대관비	• 연습실, 극장 대관비	
	• 약기 임차비	• 약기 임차비 • 조명, 무대 관련 임차비	
		• 장비 물품 임차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 홍보관련 우편요금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여비	교통·숙박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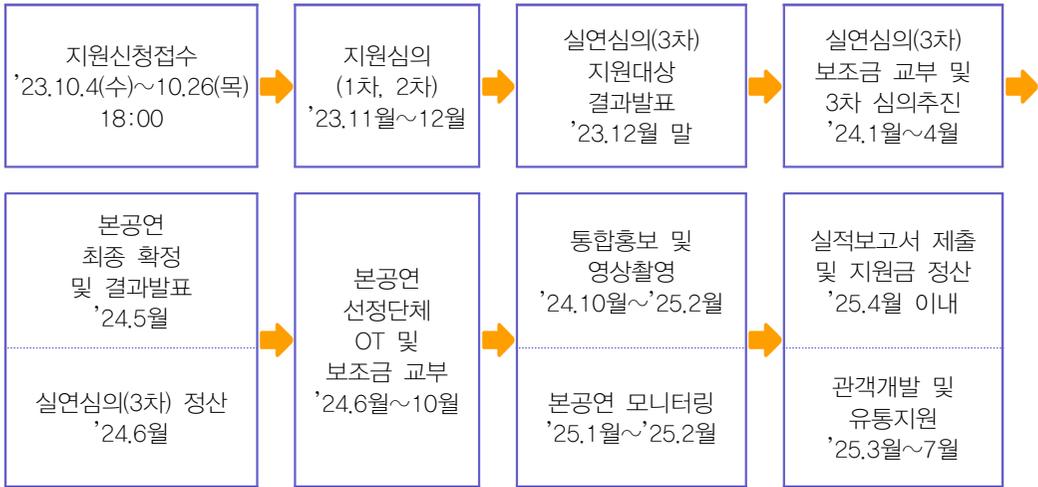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단체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2024년 사업예산 : 6,280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전체적인(실연심의, 본공연 등)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 우수 창작 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향후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심의방법 : 3차 실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차별성) (40%)	• 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 •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 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동시대성을 담보한 미학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적절히 보여주는가? • 실연은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내용에 부합하는가?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 우수 창작 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향후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관객평가 (20%)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제출자료	구분(분야별 상이)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	무용	전통 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음악	
① 지원 신청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② 예산집행계획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Excel 형식 ※ 지정양식 내 실연심의/ 본공연 2개 시트 필수 작성
③ 핵심 창작진 사업참여 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서명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
④ 대본	필수	선택	선택	필수	선택	• 대부분은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 사용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창작오페라의 경우, 작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 • (음악) 음악극의 경우,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
⑤ 악보	-	-	선택	필수	필수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8곡 이상 필수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보컬스코어 포함)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으로 분량으로 구성(*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 필수) -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⑥ 음원	-	-	선택	필수	필수	•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4곡 이상 필수 -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육성) 포함 •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 30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제출자료	구분(분야별 상이)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	무용	전통 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음악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⑦ 저작권 관련 서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부적격>

-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정산과 관련하여 반환 및 반납 대상 보조금을 반납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결격 처리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 시 결격 제외)

<지원심의 감점>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정산 기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연극 분야 : 02-3668-0025
-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 무용, 전통예술 분야 : 02-3668-0067
- 음악,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공연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현장의 각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활동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예술 분야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 (3개년 지원)
-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동종 사업영역에서의 1회 이상 공적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
-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예술현장 각 분야별 해당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단체

공연장 운영,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단체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단체

○ 신청유형

유형	구분
창작단체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을 수행하는 단체
창작공간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자격기준

[공통 자격기준]

- ① 5년 이상 활동 경력
- ②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 * 사업 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공연분야 자격기준]

분야	지원자격
공연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 및 법인, 축제 조직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 (※ 개인 예술가,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 단체 신청 불가) • 공모에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공연, 축제 등 행사의 활동 이력은 각각의 이력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언론 및 방송의 리뷰 기사, 티켓 판매처 판매 내역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인정됨 - 비평지 발간은 최근 5년간 발간한 비평지의 각 호별 실제 제작 부수, 배포 및 판매 내역을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됨 - (창작공간 유형 추가) 공연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미등록 시 행정 결격),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행정 결격). 또한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연 정보, 대관 현황 및 대관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함(홈페이지 주소가 없거나, 정보 미흡 시 지원 심의 과정에서 참고)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공연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단체 지원) 축제 개최, 공연 신작 제작 및 발표, 레퍼토리 공연, 공연 비평 등 공연예술 창작 활동 및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리서치, 리허설, 신진예술가 발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밴드 규모에 따라 연간 사업 모니터링 건수,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 중 문예기금 비율, 수익금 보고 및 정산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축제 개최, 공연 비평 등이 없이, 공연 제작 및 발표만 하는 사업계획에서는 연 1회 레퍼토리 공연 필수 •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의 기획 공연 및 대관공연,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 일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 할인 운영(부대시설 사용료 등 포함 할인율 최소 50% 이상, 최소 대관 공연 10건, 최소 대관 단체 10단체) 또는 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 공연을 연 3회 이상 개최해야 함

○ 2024년 총 지원예산

공연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2백만원 (기존 다년간 지원사업 선정금액 7,560백만원, 2024년 신규 선정예산 12,042백만원) - 창작단체 14,602백만원(기존 선정금액 7,560백만원, 신규 선정예산 7,042백만원) - 창작공간 5,000백만원 (기존 선정금액 0원, 신규 선정예산 5,000백만원)
------	--

* 정부 예산 변동에 대응하여 지원심의 시 일부 단체는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병행하여 선정 예정

○ 지원규모

구분	Band1	Band2	Band3
연간지원액	2천 이상~1억 미만	1억 이상~3억 미만	3억 이상~5억 미만
자부담 최소 비율	10%	10%	10%
선정예산건수(창작단체)	50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산건수(창작공간)	25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산건수(합계)	75건 내외	10건 내외	6건 내외

* 자부담 최소비율은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될 때 마다 5%씩 증가 예정(2024년에 창작주체 선정 시 자부담 최소비율은 10%, 3년 후인 2027년에 연속으로 창작주체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최소비율은 15%로 상향됨)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조건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연간 사업계획 공개 발표·성과공유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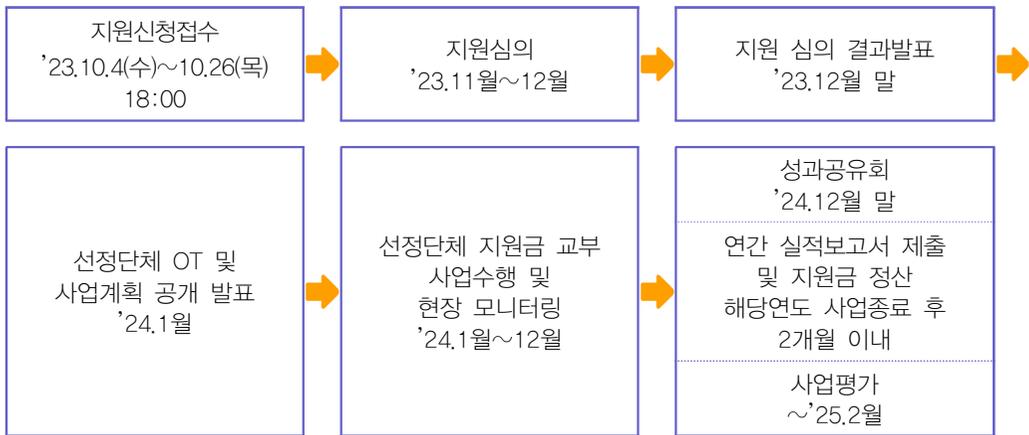
* 홈페이지, 웹진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 사업 성과에 대해 연도별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선정단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안전관리, 관객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창작공간 지원선정 단체(공연장)는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연(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포함)에 대해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할인 권증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할인율 50%, 1회 2매까지 제공). 또한, 당일 잔여석을 문화누리카드로 현장 결제 시 저렴한 단일가격으로 판매를 권장함(3만원 이상의 티켓 1만원, 3만원 미만 티켓 5천원)
 - ※ 당일 잔여석에 한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필요(추후 별도 안내)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단체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및 단체 운영 역량 • 신청단체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 그리고 다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 신청단체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예산 계획 (필수 편성 항목, 인건비 및 사례비 비중 등)은 적절한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 참여자 전원 문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프로젝트 시행 전 체결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월 평균 사례비를 의도적으로 낮춰 미가입할 수 없음) ※ 공연 등 행사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재보험, 상해보험 또는 행사보험 가입 필수 ※ 창작주체 지원사업의 일반 운영경비는 창작단체 30%, 창작공간 50%까지 보조금에서 편성 가능 ※ 창작공간 지원사업 Band 2, 3은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요원 인건비 필수 편성 ※ 기획사에 비용 지급 시 기획자에 대한 사례비로만 지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출판·인쇄비 재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무대 및 소품 등 제작비 회계검사 수수료 영유아돌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 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연습실 대관료 발표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요금 보험료(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료, 숙박비 등 실 소요 경비 	
민간 이전	고용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필수 제출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 파일 1개, 엑셀파일 1개 등 총 2개 양식) ② 문화예술기관 지원사업 수행 관련 1개 사업의 실적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③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붙임 엑셀 양식)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추가] 창작단체 유형	① 공연장 외 장소에서 1회당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한 공연 및 축제 :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행사의 재해대처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의거) *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 (개최장소 : 산 또는 수면 /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는 관객 수와 상관없이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요
	[추가] 창작공간 유형	①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 보고서 ② 2023년 기준 재해대처 계획서(※ 공연법 및 시행령 의거)
선택 제출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① 3년간(2024~2026년) 단체의 활동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대관 확인서, 참여 확인서 등 ② 단체의 연간사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시 참고자료)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분야	창작단체	창작공간
연극, 뮤지컬	061-900-2194 061-900-2208	061-900-2197
무용	061-900-2202 061-900-2192	061-900-2198
음악		
전통예술		

7.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구분	일시	주요내용	줌 링크 및 아이디
1차	10월 10일(화) 14:00~17:00	1. 기본 사업 소개 2. 기초 질의 응답	링크: https://us06web.zoom.us/j/6529363351?pwd=aUJiN3BDd1h4Ym10aTFjNVo3SkFqZz09
2차	10월 23일(월) 14:00~17:00	1. F.A.Q. 등 안내 2. 심화 질의 응답	회의 아이디 : 652 936 3351 암호 : 2220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동일했거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요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원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가 복수로 응모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며,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집행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지자체 및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지원사업에 2024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연, 축제, 행사 등 주요 프로젝트가 관객 및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업, 시설 개선이나 자산의 취득이 주 목적인 사업,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 이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지원신청서 및 공고된 사업계획서와 단체 소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운영비, 참가비, 재료비, 광고료 등을 받는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임원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ARTS COUNCIL KOREA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다원예술 창작산실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167	83
다원예술 창작주체			88

다원예술 창작산실

새로운 유형의 창작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했던 기존의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사업을 202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우수 창작작품 브랜드인 ‘창작산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향유 측면에서도 더욱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규모와 예산을 전년도 대비 상향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도 기존의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기술 결합 예술활동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장르 중심 지원사업에서는 결코 시도해볼 수 없었던 동시대 가치를 담은 실험적인 창작활동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다원예술 창작산실	
유형 구분	창작발표	① 쇼케이스 ② 창작발표	
세부 분야	-	분야A :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 기술 결합 예술활동	
지원 예산	총 515백만원	총 1,568백만원	
지원액 규모	2~5천만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지원규모
		유형①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유형② 창작발표	3천만원~5천만원		

1. 사업목적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분야 우수 창작물 발굴
- 기존 전통 장르에서 실현하기 힘든 새로운 접근에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예기금 창작 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I. 지원개요

- (지원분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작발표 지원
 - 탈장르, 다매체, 기술 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다원적 성격을 가진 기초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지원

〈유형 구분〉	
유형① 쇼케이스	유형② 창작발표
〈세부 분야 구분〉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 (지원내용) 활동 비용 지원 및 비재정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

II. 필수사항

- (지원신청) 작품 제작 및 발표에 대한 기획의도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 (활동결과)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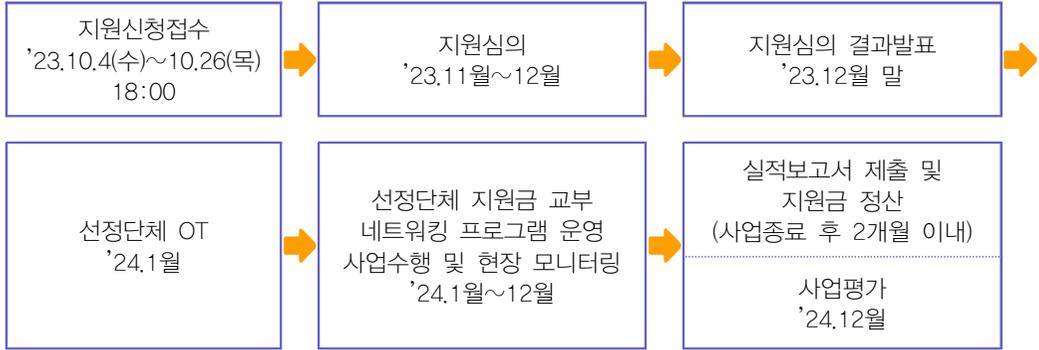
- 신청대상 : 예술가 및 단체
-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예술창작 프로젝트 발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2024년 총 지원예산 : 1,568백만원
- 지원규모

유형	연간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10% 이상	18건
창작발표	3천~5천만원	10% 이상	32건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진행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예술성 (40%)	<p>[작품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기획 의도가 분명하며, 이를 표현하는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p>[작품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분야A)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 (분야B) 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계획의 충실성 (40%)	<p>[실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확산 등의 창작발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p>[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단계부터 발표(관객개발 포함)까지 일정 및 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한가? <p>[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p>[참여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력은 사업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투입인력/기간) 되었는가? • 참여 인력은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기대효과 (20%)	<p>[발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p>[현장 파급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 (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 •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 (지원신청서 명시 필수) •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 • 홍보비 • 영유아 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 -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공통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분야A 필수> 기술분야 전문개(업체)참여 의향서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분야B 필수> 작품 구현도(기술도면)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 <해당 시> 저작권 동의서 (기존 작품을 활용, 가공, 참조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외) 공간 협력 가능

- 사유 : 창작 및 발표에 특화된 공간 부족 및 한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필요 반영
- 협력대상 : 공공 및 민간 전시장·공연장 등 운영주체
- 협력범위 : 발표 및 연습을 위한 공간 무료 대관
(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협력표기 : 창작결과물(포스터, 팸플릿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원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예술인과 협업하는 공간지원을 통해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 개발 활성화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I. 지원개요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유형 구분〉	
유형① 예술가/단체 (3개년 지원)	유형② 공간 (1개년 지원)
〈세부 분야 구분〉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p>II. 필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 창작주체는 지원 기간(3개년/1개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 (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활동결과)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 연간 활동실적을 담은 영상 제출 	

○ 신청대상 : 실험적 예술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가/단체, 공간운영 주체

○ 자격기준

[유형별 자격기준]

유형	지원자격
예술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 (필수) 관련 활동 증빙서류 제출 문화예술 지원기관(공공)의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 (필수) 사업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의 창·제작, 향유 실적을 가진 공간 운영 단체 - (분야A) 전시 및 퍼포먼스, 다원적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등 운영 - (분야B) 기술 결합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창·제작 스튜디오, 시연·발표 공간 등 운영 → (필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유형	지원자격
예술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2026년 3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작품 창작·연구·비평 등 다양한 예술 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1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필수) 공간 자체 기획 프로젝트 2회 이상 개최 * 외부 예술가(단체) 참여 및 창작 인프라(장비, 기술 인력) 제공 필수

○ 2024년 총 지원예산 : 900백만원

○ 지원규모

유형	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예술가/단체	5천만원(정액) × 3개년	10% 이상*	2건
공간	1억원(정액) × 1개년	10% 이상*	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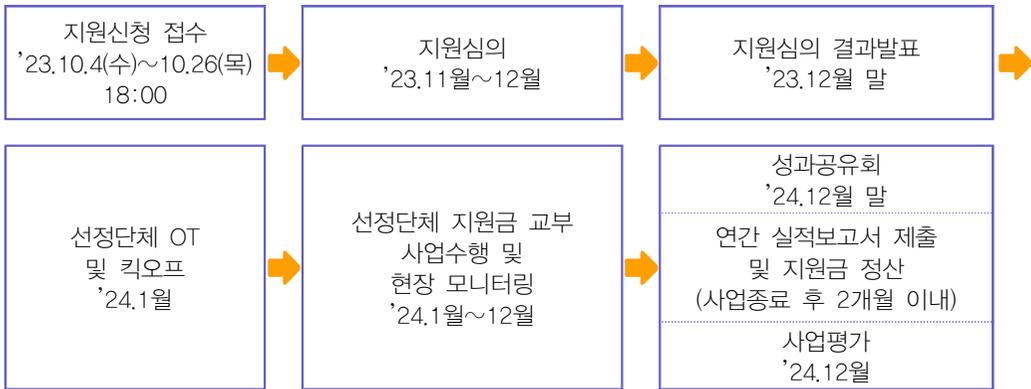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향후 창작주체 사업 재선정 시 자부담 비율 상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킥오프(착수회의)·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를 통한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심의를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예술활동/공간운영 이력(경력) • 지원자의 대표적 지원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지원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공간)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장비/인력)를 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예술현장 친화적 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며,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이 높은가?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예술가/단체)/1년간(공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지원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활동 이력과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원자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통해 지원자/공간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창작 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사업자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 (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 •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 (지원신청서 명시 필수) •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 • 홍보비 • 영유아 돌봄비

비목	세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 -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업체 대가 지급(해당 시) - 신청주체가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대가 지급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예술가/단체 유형)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 실적보고서
 - <필수>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정책영역

국제교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2023. 10.4.(수)~10.30.(월) 18:00 마감	문학	061-900-2211	95
		시각예술	061-900-2217	
		연극·뮤지컬	061-900-2214	
		음악·전통예술	061-900-2218	
		무용·다원예술	061-900-2213	
국제예술공동기금	'23.11월~12월 중 접수 예정	061-900-2211 061-900-2203	161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구.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제예술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합 및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예술인/단체들이 주요 해외 레지던스에 참여하여 창작 및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수 작품을 창작·발표하는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랜 지원과정 속에서 우수 작품의 확산을 위한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넘어 인적 혹은 기관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상호호혜적인 교류방식을 선보였던 프로젝트들이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속성장가능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곧 한국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부터는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교류프로젝트와 네트워크 주체들을 발굴·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예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성]

기존		변경		
(우수 프로젝트 창작·발표 중심)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경쟁력 제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심)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예술교류 모델 발굴”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전략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예술인/단체의 해외 진출, 공동창작 및 협업 지원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 목적	민간차원의 국제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진출 및 교류 지원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예술의 국제 네트워크 다변화,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확장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 비지정)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지정, 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과정별 지원 - 네트워크구축 / 네트워크활용 / 네트워크전략(국제예술공동기금)
지원 심의	-	<p>새롭게 국제예술교류에 도전하는 예술인/단체 및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발굴을 위해 최근 3년(2021-2023)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수행실적 반영</p>
	장르별 심의	<p>지속확장가능한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젝트 집중 지원을 위한 장르 통합 심의</p>

1. 사업목적

- 다양한 형식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 확장 지원
- 네트워크 구축 기회 확장 위한 리서치 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의 다층적 전략 모색
- 한국예술의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가/단체의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활용 사업 발굴 및 집중 지원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 해외 파트너 예술인/단체/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위한 리서치, 레지던스, 워크숍 등)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공동창작, 발표 등)
- * 비/지정형 구분
 - 비지정 : 한국 예술인/단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지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참여

- 신청대상 :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자격기준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

구분	내용	유형별 지원자격
<p>유형① 네트워크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협업을 전제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 	<p>〈유형①〉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예술가 및 단체의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 5년 내(2019년~2023년)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및 신청시 행정결격처리(레지던스 선정이력은 비지정/지정형 지원을 포괄하여 산정)
<p>유형② 네트워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예술가 및 단체 	-

[사업 유형별 유의사항]

〈유형①,② 공통〉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중복 선정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세부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내용	
<p>유형① 네트워크구축</p>	<p>비지정 (국내/국외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내외 리서치, 워크숍, 네트워킹,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초청/참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국내외 주요 축제 내, 국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국내 인바운드 레지던시 기관의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p>지원대상이 아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 발굴,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 등의 창작준비단계 사업 (해외에서 진행하는 작품 제작 등을 위한 장소기반 혹은 단순 연구 목적 리서치 사업, 해외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에 지원 신청 해외 진출을 위한 작품 유통 목적의 아트페어, 공연예술마켓 참여 부스, 쇼케이스 지원

구분	내용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지정 104p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센터스테이지코리아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등)에 지원신청 • 예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 협력 레지던시 기관을 통해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 해외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비지정 (국내/국외 개최)	•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 (국내외 개최) * 예) 해외 파트너간 협업 통한 공동창작 작업과 국내외 발표 세계 유수의 해외 비엔날레/트리엔날레/축제 공식 초청 작품 발표 이 외 예술가·단체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확장하는 프로젝트 <u>지원대상이 아닌 사업</u> • 주요 국가 행사 및 수교계기성 행사, 재외한국문화원 연계 사업, 지역 보유한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내외 확산사업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지원신청 청년예술인/단체의 작품 해외 창작·발표활동(전시·공연·발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에 지원 신청
	지정 155p	• 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참여 * 해외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2024년 총 지원예산 : 20.55억원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 3억원
-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 17.5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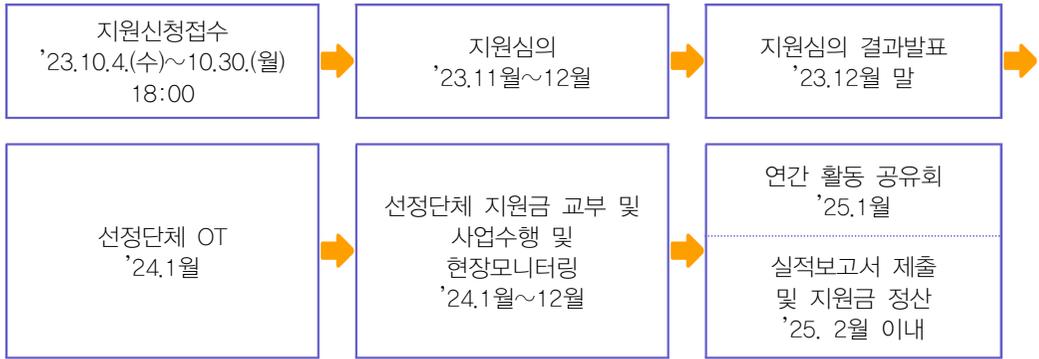
○ 지원규모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40건 내외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최대 8천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30건 내외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사업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점검 추진 및 연간 활동 성과공유회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 유형 ❶ 네트워크구축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신청자는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및 의도가 명확한가?
사업계획의 총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국제적 기대효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를 구축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용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정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인 교류(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조건, 예산분담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음직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신청자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시) 기존 협력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자와 해외 협력 파트너 간 네트워크 활용방식이 타당한가?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신청자는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및 의도가 명확한가?
사업계획의 총실성·타당성 · 실현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태프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협업구조(균형있는 역할 및 예산배분 등)가 적절하게 반영된 예산계획인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국제적 기대효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 유형①네트워크구축(지정) : 해외협력기관별 지원가능항목 참조하여 편성
- 유형①네트워크구축(비지정), 유형②네트워크활용(지정/비지정)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 재료, 제작, 설치, 운송비 • 홍보 및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프로그램 참가비 (유형1.네트워크구축만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사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사업수행 중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만 사례비 편성 가능(총사업비 10%) • 회계검사수수료 : 편성 의무(지원신청 공통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 영유아 돌봄비 : 취학 전 자녀 시간 당 1만원, 80만원 기준 편성 가능
	공공 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급 수수료 • 보험료 (작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 우편요금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및 장비 임차료 	
여비	국외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
	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국내개최 사업 및 국내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연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2023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2022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2021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필수>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1부.
 - (예시) 계약서, 초청승낙서, 초청장 등 사업추진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재사항) 서류 내 상호 서명 및 교류조건(초청대상, 초청자, 초청조건(기간, 비용 등) 명시
 - * 각 유형별 '지정형'사업 지원 시 제외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신청 유의사항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걸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심의 감점〉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061-900-2211
- 시각예술 061-900-2217
- 연극·뮤지컬 061-900-2214
- 음악, 전통예술 061-900-2218
- 무용, 다원예술 061-900-2213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지정형 해외협력기관 프로그램 목록(총 14개소)

* 해외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야	구분	선정방식	비고
문학 (5개소)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IWP)	(예술위) 최종선정	106p
	영국 노리치작가센터	(예술위) 최종선정	110p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13p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13p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13p
시각예술 (6개소)	독일 베를린 베타니엔스튜디오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16p
	핀란드 헬싱키 HIAP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20p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23p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예술위) 최종선정	126p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28p
	벨기에 WIELS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31p
연극·뮤지컬 (1개소)	영국 에든버러 모멘텀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34p
무용 (2개소)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37p
	영국 더플레이스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40p

※ 참고사항 (해외 협력기관 공모 4개소)

- 아래의 프로그램은 해외 협력기관에서 직접 공모를 진행하여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요.
- 해외 협력기관별 지원신청서 접수 일정 및 제출 방법이 상이하고 연중 수시 공지되므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술위원회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 해외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야	해외 협력기관	공모/선정방식	공모 추진여부	비고
시각예술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해외협력기관) 공모 및 최종선정	공모 진행중 ('23.9월)	143p
	네덜란드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해외협력기관) 공모 및 최종선정	추후 공모 예정 (별도 공지)	146p
무용	오스트리아 댄스웍	(해외협력기관) 공모 및 최종선정	추후 공모 예정 (별도 공지)	149p
문화일반	EFA 신진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플리에	(해외협력기관) 공모 및 최종선정	선정 완료 ('23.6월)	152p

문학

유형 1 네트워크구축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세계적인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이하 IWP)에 우리 문학 작가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2. 지원신청자격

- 문인(시인, 소설가, 극작가)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 ※ 선정된 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담당자와 사전 영어 인터뷰 진행 예정
 -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프로그램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담당자와 직접 소통 및 통역 없이 비자 인터뷰 진행 가능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작가 1인을 선정 및 파견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사무국
- 참가기간 : 2024. 8월 중순 ~ 11월 초 (약 3개월)
 - ※ 해당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80~85일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세미나, 워크숍, 낭독회, 공연, 주간 토론회, 강연, 각종 창작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아이오와대학교(The University of Iowa)
- 소재지 : 미국(U.S.A) - 아이오와(Iowa)
- 주소 : Shambaugh Hous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52242-2020 USA
- 홈페이지 : <https://iwp.uiowa.edu/>
- 연혁
 - 1967년부터 시작된 전통의 문학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 아이오와시는 2008년 문학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City of Literature)로 선정됨

- 본 프로그램은 아이오와시의 대표적인 문학프로그램이며 아이오와시는 문화예술관련 지원 및 세계의 예술가들과 문화전문가들의 교류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

• 기대효과

-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 번역, 자료조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창작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 제공
- 비영미권 작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출신 작가들의 미국 내 홍보 및 출판계와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오와대학의 다양한 작문 프로그램 참여 • 작문 프로그램, 번역 MFA프로그램, 극작가 워크숍, 영화연구, 비교문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문학 등 • 참가 작가들은 강연자로서 수업 또는 회의 토론을 위한 초청을 받게 됨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작품과 문단의 관계성에 대한 발표 • 매주 월요일 12:0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
워크숍 및 낭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회는 보통 2개 국어로 진행 • 다양한 개인 혹은 소그룹의 낭독회가 레지던시 기간 중에 각 분야의 도움을 받아 상시로 개최
공개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이슈 및 영향력에 대한 토론회로 매주 금요일 대학 및 지역주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역 방송으로 공개됨
출판 및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작품 출판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극장, 출판사 정보 제공 및 미국의 출판업 상황에 대한 상담 • 문학가, 편집자 또는 출판인 초청 자문 • 10-15페이지의 수업, 독서/낭독에 필요한 번역, 편집된 작품 혹은 출판될 가능성 있는 자료 웹사이트 게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작가의 작품을 낭독하고 공연배우들이 대학 내 무대에서 공연 • 참가하는 작가가 쓴 희곡 중 10-15분 분량을 발췌하여 아이오와 대학 연극학과의 배우들에 의해 상연 • 장소 : Global Express 등 • 지도 극작가 : 추후 결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리서치를 하는 자유 시간(화, 수, 목) • 문학 활동(월, 금 오후) • 견학 및 친목활동(토) • 해외협력기관 스폰서들이 참가 작가들이 쓴 작품 낭독 시간(일 오후)

※ 참가 작가는 작가 패널 토론회, 대학 학부수업 강연, 낭독회 일정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함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 숙박 (아이오와 하우스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오와대학교 내 Iowa Memorial Union 위치 • River Room, 카페테리아, Bijou 영화관, 서점, 회의실, 이벤트를룸 사용 가능 • 아이오와호텔 2층 작가들 공용 공간 이용 가능 및 간단한 아침 제공 등 • 참가작가들은 창작에 필요한 노트북과 관련 소프트웨어 준비해서 프로그램 참여 (필요 시 아이오와대학 소유의 컴퓨터 대여 사용도 가능)
--

5. 역대 참가 예술가

해외 협력기관	연도	참가 예술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2019	김재훈
	2020	코로나-19로 인해 차년도로 연기
	2021	김혜나
	2022	강병용
	2023	문보영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1인	25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비자 발급비, 현지체재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아이오와대학교 사무처)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17,500 내외(변동 가능)

※ 보험, 레지던시 트립, 숙박비, 식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 포함

○ 기타 지원항목(예술위원회 → 번역가/제작업체 지급)

– 문학 분야 작가키트 제작비 및 작품 번역비(시 15편, 소설 30페이지 내외)

※ 작가키트 제작비 및 작품 번역비는 예술위원회에서 해당업체·번역가에게 직접 지급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 061-900-2211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문학

유형① 네트워크 구축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세계적인 명성의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에 우리 문학 작가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 문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2. 지원신청자격

- 문인(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주관 행사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작가 1인을 선정 및 파견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영국 노리치작가센터 사무국
- 참가기간 : 약 1개월('24. 10월~11월)
 - ※ 향후 협력기관과 협의 후 최종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노리치작가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각종 창작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사업명 : 노리치 작가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 기관명 : 노리치작가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
- 소재지 : 영국(England) - 노리치(Norwich)
- 주소 : National Centre for Writing, Dragon Hall 115-123 King Street Norwich NR1 1QE.
- 홈페이지 : <https://nationalcentreforwriting.org.uk/>
- 연혁
 - 2004년 문학진흥기관으로 설립
 - 2012년 영국에서 두 번째, 잉글랜드에서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 문학도시 타이틀을 얻는데 기여
 - 2018년 기관명 Writers' Centre Norwich에서 National Centre for Writing으로 변경

- 기대효과
 - 2014 런던도서전(The London Book Fair 2014) 후속 교류 사업으로 유럽에 한국 문학인 소개 및 양국 문학인 교류 확대
 - 노리치 작가센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초대되어 유럽의 문학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세부 프로그램
 - 레지던시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참여
 - 개인 창작 활동 및 레지던시 트립

5. 역대 참가 예술가

해외 협력기관	연도	참가 예술가
노리치작가센터 (National centre for Writing)	2018	전성현, 최정례
	2019	강영숙, 김혜연
	2020	코로나-19로 인해 차년도로 연기
	2021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2022	신정근
	2023	이연주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1인	25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비자 발급비, 현지체재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노리치작가센터)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5,400 내외 (2023년 기준, 변동 가능)
 - ※ 영국 국내 숙박비, 레지던시 트립, 프로그램 비용 등

- 기타 지원항목(예술위원회 → 번역가/제작업체 지급)
 - 문학 분야 작가키트 제작비 및 작품 번역비(시 15편, 소설 30페이지 내외)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 061-900-2211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문학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해외 대학교 예술가 파견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 관련학과(예: 한국어학과 및 한국학 등) 운영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작가의 파견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 거점 참가의 기회 제공
- 해외 대학 및 문학 분야 해외 기관 내 창작 활동을 통해 우리 작가의 국제적 창작 활동 지원 및 한국 문학 세계화에 기여

2. 지원신청자격

- 문인(시인, 소설가, 극작가, 아동문학가) ※ 해외협력기관별 상이함
 - 희곡을 제외한 장르 : 최소 1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
 - 희곡 : 최소 1편 이상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
 - ※ 영어나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해외 대학교별 각 작가 1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3인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인 선발

4. 사업 세부내용

구분	대학 개요	한국학 강좌 현황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이탈리아 나폴리 • 주소 : Via Chiatamone, 61/62, 80121 Napoli • 홈페이지 : https://www.unior.it • 파견작가 : 문인 1인(소설가, 아동문학(소설)가) • 파견기간 : 약 3개월('24. 3월~5월) • 레지던스 주요 활동 : 집필활동, 한국문학 및 한국 문화 관련 강의 최소 2회 이상 개최 • 집필 공간 : 대학 도서관 등 • 숙소 : 해당 대학 근교 숙박시설 임대 (*개별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대학 : 동양학부 • 소속학과 : 한국학과 • 학사(3년제), 석·박사 과정 운영, 신입생 약 200명 규모

구분	대학 개요	한국학 강좌 현황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 스웨덴 스톡홀름 주소 : SE-106 91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 https://www.su.se/english/ 파견작가 : 문인 1인(아동문학가) ※ 그림책 제외 파견기간 : 약 3개월('24. 9월~11월) 레지던스 주요 활동 : 집필활동, 한국문학 및 한국 문화 관련 강의 최소 2회 이상 개최 집필 공간 : 대학 도서관 등 숙소 : 해당 대학 근교 숙박시설 임대 (*개별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개설연도 : 1960 소속학부 : 아시아중동학부 소속학과 : 한국학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소 : Universitätsring 1, 1010 Wien, Austria 홈페이지 : https://www.univie.ac.at/en/ 파견작가 : 문인 1인(시인, 소설가, 희곡가, 아동문학가) 파견기간 : 약 3개월('24. 3월~5월) 레지던스 주요 활동 : 집필활동, 한국문학 및 한국 문화 관련 강의 최소 2회 이상 개최 집필 공간 : 대학 도서관 등 숙소 : 해당 대학 근교 숙박시설 임대 (*개별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개설연도 : 2008 * 한국학강좌 : 1964년부터 개설 소속학부 : 동아시아학부 소속학과 : 한국학과

※ 정확한 파견 기간은 최종 선정 이후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예정

5. 역대 참가 예술가

해외 협력기관	연도	참가 예술가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대학교	2023	정대건
	2018	조용미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2019	전현정
	2020	코로나-19로 인해 불참
	2021	코로나-19로 미운영
	2022	코로나-19로 미운영
	2023	정영선

※ 2018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 운영 및 2019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와 협력 운영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대학교)	1인 (후보군 3인 내외)	1,20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1인 (후보군 3인 내외)	1,20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1인 (후보군 3인 내외)	1,20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 비자 발급비, 현지체재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 현지 숙소비(개별 예약 진행) : 예산 내 실비지원
 - 현지 코디네이터 사례비(해외협력대학교에서 지정) : 파트타임 근무, 3개월 기준 90만원
 - 홍보비 : 레지던스 체류 중 한국문학 관련 강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실비 지원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기타 지원항목(예술위원회 → 번역가/제작업체 지급)
 - 문학 분야 작가키트 제작비 및 작품 번역비(시 15편, 소설 30페이지 내외)
 - ※ 작가키트 제작비 및 작품 번역비는 예술위원회에서 해당업체·번역가에게 직접 지급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 061-900-2211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독일 베를린 베타니엔스튜디오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를 1년간 독일 베를린 베타니엔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파견하여, 창작 공간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국 작가들과 상호교류 하도록 지원함

2.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 ※ 세부 장르 제한 없음
 - ※ 영어나 독일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시각예술분야 작가 1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6인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인 선발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독일 베를린 Künstlerhaus Bethanien
- 참가기간 : 2024. 12월 ~ 2025. 11월 (1년)
- 주요 프로그램
 - 작업실 제공, 워크숍 및 세미나, 관계자 미팅, 오픈 스튜디오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 관 명 :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Künstlerhaus Bethanien)
- 소 재 지 : 독일(Germany) - 베를린(Berlin)
- 주 소 : Kohlfurter Straße 41-43, D-10999 Berlin
- 홈페이지 : www.bethanien.de
- 해외 협력기관 및 사업 소개
 - 독일 베를린 중심가인 알렉산더플라츠 근방에 자리잡은 현대 미술 레지던스 지원 기관(대표 : Christopher Tannert)으로, 젊고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가들 (독일 및 외국작가 25명)에게 개별 스튜디오(한국 작가 제공 스튜디오 : 45제곱미터)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함
 - 동 프로그램은 해외 협력기관 및 각국 정부나 관련 분야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됨
 -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 약정 체결 후 매년 1인의 한국 작가를 파견 지원 중
 - 베를린은 현대 시각예술의 주요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및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

기가 맞물려 유럽 및 전 세계 현대 미술 작가들이 모여두고 있음

- 기대효과
 -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추진하고 세미나, 오픈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작품 창작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현대 시각예술의 거점인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함으로써 국외 미술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교류 기회 제공
- 공간 및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베를린 시내 지하철(U-Ban) 1번선 Kottbusser Tor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 알렉산더플라츠 및 미떼 지역 인근 • 개인 스튜디오 : 45㎡ 의 작업실 제공. 싱크대 등 간단한 취사시설 및 책상, 의자, 인터넷 설비 제공. 숙박 가능 • 아카이브 : 역대 참가작가 포트폴리오, 관련 서적 등이 정리되어 있음 • 전시장 : 스튜디오 작가들을 위한 전시장(대, 중, 소)이 여러 개 갖추어져 있어 오픈 스튜디오 및 기획 전시 가능 • 라운지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사용 가능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니션 상주(4인) 및 작업 협조 • 워크숍 및 세미나 : 연중 • 오픈 스튜디오 • 기획자 등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제공 • 년 발행되는 'BE MAGAZINE'에 작가 및 작품 소개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 혹은 독일어로 진행

-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숙박 : 45㎡ 크기로 간단한 취사시설 및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 갖춰져 있어, 작가가 원할 경우 스튜디오 내부에서 주거가 가능하며, 인터넷 선을 구비하여 개인 컴퓨터를 가져갈 경우 사용 가능 • 그 외 : 인근 아파트를 임대하여 숙박할 수 있음(개인부담)
--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세부 장르
2005	김신일	미디어
2006	김윤호	사진
2007	이문주	회화
2008	안정주	미디어
2009	최수정	회화, 설치
2010	김윤철	미디어
2011	김아영	미디어

연도	참가 예술가	세부 장르
2012	이혜인	회화
2013	나 현	설치 및 영상매체
2014	김덕영	설치
2015	박기진	설치
2016	한석현	설치
2017	유비호	회화, 미디어
2018	이영호	설치
2019	차혜림	회화, 설치, 미디어
2020	기슬기	사진, 설치
2021	박희자	사진
2022	박민하	미디어
2023	이정우	미디어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베타니엔 스튜디오)	1인 (후보군 6인 내외)	31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베타니엔 스튜디오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27,320

※ 스튜디오, 재료비 및 제작비, 현지활동비(현지체류비) 등

※ 해당 지원 내역은 베타니엔 스튜디오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3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작품 포트폴리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포트폴리오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아래 형식에 맞춰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30MB 이내) - 영상작가의 경우 : WMV, MP4 등 파일 영상 자료 (5분 내외, 100MB 이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③ 베타니언 스튜디오 지원신청서(영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지원신청서 1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분야 : 061-900-2217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북유럽 큐레이터 레지던시(HIAP)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시각예술 기획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현지 네트워킹 능력, 전시기획 리서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신청자격

- 시각예술분야 기획자
 -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 ※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시각예술분야 기획자 1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6인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인 선발
 - ※ 필요 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자에게 별도 공지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핀란드 헬싱키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Programme
- 참가기간 : 2024. 10월~11월(약 1개월)
- 주요 프로그램
 - 작업실 제공, 크리틱 워크숍, 관계자 미팅, 리서치 및 네트워킹 확장 기회 제공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HIAP(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Programme)
- 소재지 : 핀란드(Finland) - 헬싱키(Helsinki)
- 주소 : Suomenlinna B 44 E13, Susisaari 00190 Helsinki, Finland
- 홈페이지 : www.hiap.fi
- 공간 및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공간	• HIAP 본관(주소 : Suomenlinna B 44 E13, Susisaari 00190) 또는 케이블 팩토리(주소 : Cable Factory Tallberginkatu 1 C 97 00180) 내 개인 스튜디오 제공
제공 프로그램	• 워크숍, 강연 프로그램 • 현지 기획자, 아티스트 등 미팅 및 네트워킹 제공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2013	손세희
2014	김성우, 홍보라
2015	이수현
2016	이은애
2017	성용희
2018	정필주
2019, 2020, 2021	-
2022	최지혜
2023	강영훈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북유럽 큐레이터 레지던시 참가지원(HIAP))	1인	31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HIAP)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2,300

※ 스튜디오, 현지활동비(현지체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해당 지원 내역은 HIAP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3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작품 포트폴리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포트폴리오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아래 형식에 맞춰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30MB 이내) - 영상작가의 경우 : WMV, MP4 등 파일 영상 자료 (5분 내외, 100MB 이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 HIAP 지원신청서(영문)	필수	• 영문 지원신청서 1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남미 시각예술계와의 교류를 위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레지던스에 한국 시각 예술분야 신진작가를 파견하여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창작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

2.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세부장르 제한 없음)
 - ※ Proyecto'ace 담당자에게 사전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자
 -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시각예술분야 작가 1~2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6인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2인 선발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Proyecto'ace
- 참가기간 : 2024. 11월~12월 (약 1개월)
 -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참가기간 변경 가능
- 주요 프로그램
 - 작품 활동 및 워크숍, 포트폴리오 리뷰 및 토론, 전시(1주)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Proyecto'ace
- 소재지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 주소 : Conesa 667 ini the Colegiales neighborhood in the city of Buenos Aires, Argentina
- 홈페이지 : www.proyectoace.org/en/home
- 공간 및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glota room : 설치, 영상 작품 전시 및 강의 • Central hall : 설치, 영상, 퍼포먼스 전시 • Dialogue space, Transverse space : 소규모 설치 전시 등 • Library : 15,000권의 자료 보관 • Workshop : 판화, 인쇄 장치 및 자료 보관 • Dark room : 인화실 • The tower : 스튜디오 • Terrace : 휴식 공간, 지역민과의 교류공간 • Snack bar : 점심 제공 및 간단한 차와 간식 제공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e 팀 및 타 작가들과의 포트폴리오 검토 및 토론 • 메인 워크숍 참가 • 레지던스 내 전문가 보조 지원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및 세부장르
2013	김 윤
2015	신혜영
2016	김재민('16.8월) / 홍기원, 강민형('16.11월)
2017	김영글, 유영주
2018	전보경, 이수진
2019	윤미연, 서동주
2020	김한나
2022	김희수, 임희주
2023	유하나, 임정서

※ 현지 주관처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파견된 홍기원, 강민형 작가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 ❶ 네트워크구축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1~2인 (후보군 6인 내외)	인당 37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4,270 (1인 기준)
 - ※ 숙소, 재료비 및 제작비 등
 - ※ 해당 지원 내역은 주관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3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작품 포트폴리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포트폴리오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아래 형식에 맞춰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30MB 이내) - 영상작가의 경우 : WMV, MP4 등 파일 영상 자료 (5분 내외, 100MB 이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 에이스피랄 지원신청서 (영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지원신청서 1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1 네트워크구축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극지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탑승 및 극지 탐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예술작가에게 새로운 창작활동의 계기를 제공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함

2. 지원신청자격

- 시각예술분야 작가
- 미국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전에 진행되는 승선교육 참가가 가능한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시각예술분야 작가 1인을 선정 및 파견

4. 사업개요

- 협력기관 : 극지연구소
- 참가기간 : 2024. 8월~9월 (약 1개월)
※ 안전교육 참석 필수(2024.6월 이전)
- 주요 프로그램 : 북극 항해 아라온호 내에서 작가 개인 창작활동

5. 역대 참가 예술가(시각예술분야)

연도	참가 예술가
2018	김재원
2019	손광주
2020	-
2021	이정화
2022	홍기원
2023	유비호

※ 남극 세종기지 제외,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의 시각예술분야 역대 참가자 현황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1인	50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숙박비 :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 아라온호 승선 관련 교육비, 건강검진비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 비자 발급비, 보험 가입비, 현지체재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 협력기관 지원항목(극지연구소 → 선정자 지원)

- 항해관련 안전교육
- 승선 기간 숙식지원, 필요 시 승선 과학자 및 연구원 멘토링 지원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포트폴리오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아래 형식에 맞춰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30MB 이내) - 영상작가의 경우 : WMV, MP4 등 파일 영상 자료 (5분 내외, 100MB 이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큐레이터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예술과 기술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기획자로서의 글로벌 역량 강화하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수상작가를 포함한 예술과 기술 분야 주요 작가 및 큐레이터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확대, 국내 및 아시아권 미디어 아트, 예술과 기술 분야 작가 및 작품을 현지 페스티벌에 소개하는 교두보적 역할 기대

2. 지원신청자격

- 시각예술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분야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 ※ 미디어아트 또는 예술과 기술 관련 전시 및 행사 경험이 있는 자(경력 3년 이상)
 -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서 선정하는 최종 지원대상자 1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4년도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행정결격 사전 검토)
 - (1차)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서류 심의 후 2~3명의 후보 선정
 - (2차) 인터뷰(온라인 또는 유선) 심의 진행 및 선정자 발표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
- 참가기간 : 2024. 4월(1주일) / 6월~9월(4개월)
-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Ars Electronica Festival
- 소재지 : 오스트리아(Austria) - 린츠(Linz)
- 주소 : Ars Electronica, Stra ß e 1, 4040 Linz, Austria
- 홈페이지 : ars.electronica.art/news/en/

•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월) 온라인 워크숍, 강연 프로그램 • (4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공모심의 참관 및 관계자 미팅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전시 및 축제 프로그램 기획·진행, 최종 프리젠테이션 및 보고서 제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측에서 숙박시설 제공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및 전시 기획팀에 소속되어 사전 조사, 주제 연구,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전시 관련 업무 전반 수행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작가 및 세부장르
2023	이수훈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큐레이터 레지던스)	1인	56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2회,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28,800
 - ※ 프로그램 운영비 등
 - ※ 해당 지원 내역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4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ARS 지원신청서(영문)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Application Curatorial Residency Ars Electronica [your name]
② 작품 포트폴리오(영문)	필수	PDF 파일로 첨부(최대 5페이지, 30MB 이내)
③ 자기소개 영상(영문)	필수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향후 계획, 기대하는 바 등에 대하여 영어로 발표하는 영상 촬영 후 첨부 또는 ARS 지원신청서 내 링크 기재(mp4파일, 최대 3분, 100MB 이내)
④ CV/이력서(영문)	필수	PDF 파일로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벨기에 월스(WIELS)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를 6개월간 벨기에 브뤼셀 월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파견하여, 창작 공간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국 작가들과 상호교류 하도록 지원함

2.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 ※ 세부 장르 제한 없음
 - ※ 영어나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월스에서 선정하는 최종 지원대상자 1인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4년도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행정결격 사전 검토)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벨기에 브뤼셀 월스(WIELS)
- 참가기간 : 2024. 7월 ~ 2024. 12월 (6개월)
- 주요 프로그램
 - 작업실 제공, 워크숍 및 세미나, 관계자 미팅, 오픈 스튜디오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벨기에 브뤼셀 월스(WIELS)
- 소재지 : 벨기에(Belgium) - 브뤼셀(Brussels)
- 주소 : Av. Van Volxem 354, 1190 Forest, Brussels
- 홈페이지 : <https://www.wiels.org/en>
- 해외 협력기관 및 사업 소개
 - 벨기에 건축가 아드리안 블룸이 설계한 1930년대 양조장을 복원해 2007년에 설립된 벨기에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센터로, 전시장, 강당, 세미나실, 카페, 서점 등으로 구성된 열린 복합문화공간
 - 국제적인 예술가 및 큐레이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기별 벨기에 및 해외 작가 9명을 선정해 전시, 발표, 오픈스튜디오, 비평, 토론,

스튜디오 방문 등 창작활동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서 체결 후 2024년부터 매년 1인의 한국작가 파견

• 공간 및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정도 거리 • 개인스튜디오 : 40m² 의 개인 작업실 제공 • 숙박 : 전시, 수도, 난방, 인터넷 등이 구비된 숙박시설 제공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기술 지원 • 워크숍 및 세미나 • 오픈 스킵 및 강연 형식의 공개 프리젠테이션(1회 필수) • 현지 전시 및 행사 참가(1회 필수) • 기획자 등 관계자 스튜디오 방문 및 네트워킹 제공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5.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벨기에 월스(WELS))	1인	31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월스)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20,722
 - ※ 스튜디오, 숙박비, 현지활동비(현지체류비) 등
 - ※ 해당 지원 내역은 월스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WELS 지원신청서 (영문)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② 작품 포트폴리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포트폴리오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아래 형식에 맞춰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이미지별 A4 또는 1000px이내) - 영상자료는 원본 제출 없이 포트폴리오 PDF 파일 및 제출자료①의 WELS 지원신청서 내 ‘IMAGE SCRIPT’ 내 링크 기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제출자료 상세 내용은 영문 안내자료 참조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분야 : 061-900-2217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연극·뮤지컬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에든버러 축제 모멘텀 참가

※ 본 사업은 주한영국문화원-예술위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3~2025년 3년 간 한시적 진행

1. 사업목적

- 스코틀랜드(에든버러) 예술계와 협력 계획이 있는 연극·뮤지컬 분야 예술가·예술단체에
게 양질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필수) 3건 이상의 공연예술 분야 국제교류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자
 - (필수)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필수) 스코틀랜드(에든버러) 예술현장과 추진코자 하는 구체적인 국제교류 구상*이 있는
연극·뮤지컬(공연예술)분야 공연·축제기획자
 - 단체 단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파견은 1인의 인력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청단체(신청자)는 일정
수준의 권한과 재정자립도(후원 및 중장기 지원, 자부담금 확보 등)를 확보하여야 함
- * 구상 예시 : 공동제작·리서치·커미션, 공연·레지던스 기회 창출(한국/스코틀랜드), 양국
예술가 역량개발, 양국 예술현장 이해도 증진 및 추가교류 기회 마련 등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1~2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4~6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2인 선발

4. 사업 개요

- 프로그램명 : 에든버러 모멘텀(Edinburgh Momentum)
- 주관처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영국문화원 공동추최
주한영국문화원 협력
- 기간 : 2024년 8월 중 한국 대표단 파견 주간(약 1주일)
 - 리서치 및 네트워킹 목적의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축제기간 중 현지 체류 일정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추가 체류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원신청시 체류계획 명시)
- 주요 프로그램 : 사업 소개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 공연 관람, 유관기관 미팅 참여 등

※ 파견 프로그램 세부 소개

- 프로그램명 : 에든버러 모멘텀(Edinburgh Momentum)
- 홈페이지 : <https://www.edinburghfestivalcity.com/about/momentum>
- 개요 :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에든버러의 핵심 축제기간(8월 중)에 전세계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코틀랜드(에든버러) 예술계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 매년 6개 국가(권역) 사절단과, 1개 분야의 다국적 사절단을 구성
- (참고자료) 모멘텀 케이스 스터디-영문
https://scotland.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h149_momentum_stories_from_edinburgh_a4_final_web.pdf
- 주요 제공사항
- 개인별 맞춤형 일정(미팅) 수립 및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연예매(£100 한도) 지원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공연관람 희망시에도 담당인력이 핫라인으로 예매 지원
- 참여자 관심 분야와 관련한 관계자 미팅 지원(스코틀랜드 예술가·단체, 에든버러 11개 축제 감독급, 정부관계자 등 네트워킹)
- 에든버러 주요 축제와 스코틀랜드 예술현장에 대한 브리핑 및 정보 지원
- VIP 이벤트(리셉션, 조찬모임 등) 초청 및 축제 주요 행사 참여 지원
* 상기 내용은 선정 후 현지와의 소통 및 프로그램 진행 중 탄력적으로 조정됨
- 기타 사항
- 본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문화권 이해 및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을 주 목적으로 하며 완성공연 판매 중심의 마켓 형태가 아님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선정 단체(파견자)
2023	극단 돌파구(전강희 드라마터그)

※ (참고)참가후기 :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 자료 - 출간 및 발표자료 - 자료집(포럼/세미나)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에든버러 축제 모멘텀)	1~2인 (후보군 4~6인 내외)	31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해외협력기관 지원항목(해외협력기관 → 선정자 지원)
 - 숙박비(프로그램 기간 중), 공연관람비(100파운드 상당)
 - 공식일정 참여 및 네트워킹 센터 접근 권한(무선인터넷), 공식 일정 중 이동지원 등
 - ※ 비자 발급비, 보험 가입비, 현지체재비(일비, 식비 등) 등은 참가자 부담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영문지원신청서 (현지심의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 경력(국제교류 프로젝트 위주)과 스코틀랜드(에든버러) 예술계에 대한 관심사와 네트워킹 계획을 작성 - 후보군 선발 뒤 현지 주관처 심의에 직접 활용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뮤지컬분야 : 061-900-2214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무용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 공연예술단체의 레퍼토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몽골 지역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국-몽골 공연예술 아티스트 간 협업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현대무용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안무가 및 무용가 5~6인으로 한 팀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지원신청
 - 개인 명의로 지원신청 할 경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프로젝트 그룹 구성하여 지원신청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1팀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3~5팀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팀 선발
 - ※ 1차 선정된 후보자의 영문신청서와 제출자료를 몽골예술위원회(주관처)에 전달하여 최종 심사

4. 사업개요

- 해외협력기관(주관처) : 몽골예술위원회
- 참가기간 : 2024. 6월 중 약 2주간 진행 (예정)
 - ※ 몽골예술위원회와 2024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 진행 중이며, 하기의 프로그램 내용은 주관처(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몽골 울란바토르(테렐지 국립공원) 지역에서 2주간 공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 한국-몽골 무용가 간 공동창작 워크숍, 몽골 현대무용 강습
 - 공동창작 워크숍 결과물 공개발표(모션 몽골리아 페스티벌 관객 대상 프리젠테이션)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분야	참가 예술가
2014	시각예술	김도경
2015	전통예술(음악)	사단법인 공명
2016	전통예술(음악)	누베이스 레코드
2017	전통예술(음악)	블러섬랜드
2018	전통예술(음악)	노름마치
2019	전통예술(음악)	절대歌인
2020-2023	-	코로나19 및 현지 사정으로 미진행

* 2019년 절대歌인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참가 후기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doFrseq_Dxo

※ 해외 협력기관 소개

- 기 관 명 : 몽골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Mongolia)
- 소 재 지 : 몽골 울란바토르(Delta Center, 4th Floor, Juulchin Street, Chingeltei District)
- 홈페이지 : <http://artscouncil.mn/>
- 기관 소개
 - 2002년 세워진 NGO로서 예술과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 예술교육, 예술가 육성, 문화유산, 예술의 가치 확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단체와 2024년 개최되는 ‘Motion Mongolia’ 국제현대무용 페스티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모션 몽골리아 국제 현대무용 페스티벌

- 몽골예술위원회는 공식 파트너인 몽골 발레단과 협력하여 2018년부터 3년을 주기로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Motion Mongolia International Contemporary Dance Festival’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축제는 개막공연, 국제 무용 쇼케이스, 몽골 무용 콩쿠르, 마스터클래스, 무용영화 쇼케이스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몽골,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세계 각지의 안무가와 무용수가 참여하였습니다.
- 2018년 1회 축제에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의 예술가들이 몽골 무대에 첫 선을 보였으며, 2021년 2회 축제에서는 한국 무용단체 ‘리브레호벤’이 참여하여 몽골 예술가들과 함께 일렉트로닉 콘서트 ‘A Meeting Hands’를 선보였습니다.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1팀 (후보군 3~5팀 내외)	60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몽골예술위원회) 지급 및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현지 부대비용 일체(숙박비, 식비, 현지교통 등) 최대 \$25,000
 - ※ 그 밖의 현지체재비, 비자발급비, 보험가입비 등 기타 비용은 참가자 개인 부담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또는 기관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NCAS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유형1_신청자(단체)명
② 몽골예술위원회 지원신청서(영문)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또는 기관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NCAS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분야 : 061-900-2213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무용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영국 더플레이스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의 무용가 및 안무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국제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개인(무용가 및 안무가)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학사졸업 이상으로 최소 3년 경력이 있는 무용가 및 안무가
 - 전문예술단체 공연 참가 실적 3회 이상 또는 연출(기획) 및 안무 작품이 1건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1인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5인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인 선발
 - ※ 1차 선정된 후보자의 영문신청서와 제출자료를 더플레이스(주관처)에 전달하여 최종 심사
 - ※ 필요 시 인터뷰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영국 더플레이스(The Place)
- 참가기간 : 2024년 연도 중 2주 이내 진행 (예정)
 - ※ 영국 더플레이스와 2024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 진행 중이며, 2023년도 프로그램의 경우 9월 중 2주간 파견 진행
- 주요 프로그램 : 워크숍, 멘토링 및 피드백 제공, 리서치 프로그램 진행 등

※ The Place Choreodrome 프로그램 소개

더플레이스의 리서치 및 작품개발(development) 프로그램으로 여름기간동안 더플레이스에서 체류하면서 안무가의 새로운 작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스튜디오 및 다양한 예술가와의 네트워크 제공 등 안무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임

– 홈페이지 참고 : <https://theplace.org.uk/>

※ 더플레이스(The Place) 소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무용 공연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공간이자 무용기관임. 극장 1개와 연습실 11개가 있으며, 전문학교 BA 3년 코스와 MA 1년 코스가 있어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임. 런던에서 현대무용의 산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런던 유명 안무가를 배출한 곳이며 EDGE라는 석사과정 무용수로 모인 무용단도 운영하며, 유럽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5. 역대 참가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2018	김이슬
2019	도황주
2020~2022	코로나-19로 인해 미진행
2023	정지혜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영국 더플레이스 레지던스)	1인 (후보군 5인 내외)	54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숙박비 : 실비 지원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 그 밖의 현지체재비, 비자발급비, 보험가입비 등 기타 비용은 참가자 개인 부담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또는 기관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NCAS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유형1_신청자명
② 더플레이스 지원신청서 (영문)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또는 기관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NCAS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더플레이스 프로그램 지원신청서_신청자명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분야 : 061-900-2213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참고) 해외 협력기관 공모]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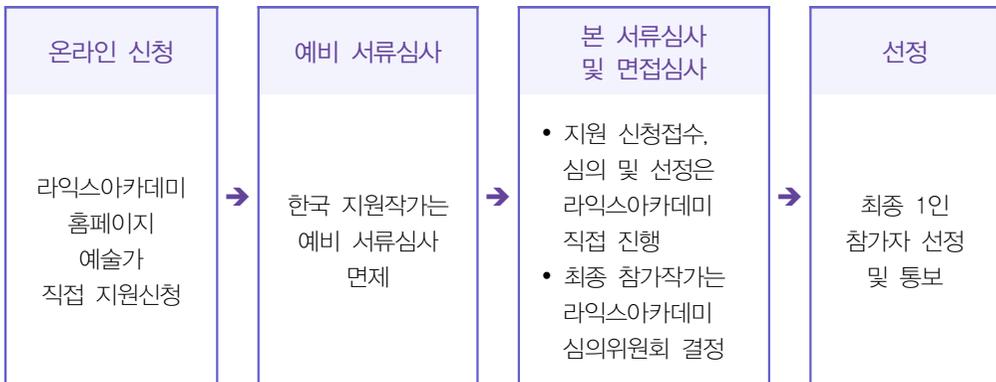
- 국제적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하여 시각예술분야 유망 한국 작가의 국제역량 강화 및 세계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창작활동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한국 국적의 내실 있는 작품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미술분야 신진작가 (25세~35세 우대)로서, 구체적인 장르는 제한하지 않으며 복합장르도 무방함 (단, 학부재학생은 제외)
- 작품의 실험성, 혁신성(독창성), 예술성, 주제의 형상화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 세부 장르 제한 없음
 -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레지던스 참가 시점 기준 2~3년 이상의 작가 활동이 있는 현대미술 작가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한국 작가 선정은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직접 신청·접수·심사 등 선정절차 직접 진행. 최종참가자 결정 후, 라익스아카데미측에서 예술위원회에 직접 통보
- 참가자 선정 심사 절차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 Beeldende Kunsten)
- 참가기간 : 매년 9월~(2년)
 - 2024년도 참가기간 : 2024년 9월~2026년 8월(2년간)
 - ※ 해외협력기관의 상황에 따라 참가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라익스아카데미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작업실 제공, 워크숍 및 세미나, 관계자 미팅, 오픈 스튜디오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 Beeldende Kunsten)
- 소재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홈페이지 : www.rijksakademie.nl
- 해외 협력기관 및 사업 소개
 - 1870년에 윌렘 3세가 세운 왕립학교가 전신으로 약 60개의 스튜디오 및 5개의 프로젝트룸, 도서관 등을 보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젊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각 국의 현대미술작가들(네덜란드 및 외국작가 25여명)에게 전용 작업공간(개별 스튜디오, 35㎡~55㎡)을 제공하고 작업과정 개방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작가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
 - 매년 11월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큐레이터, 평론가, 관람객들에게 참여작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운영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및 세부장르
2004~2005	김성환(설치), 이주요(설치)
2006~2007	송상희(설치), 함양아(설치), 손광주(영상)
2008~2009	임고은(영상),
2011~2012	오민(영상), 진시우(설치)
2013~2014	안지산(회화)
2014~2015	김영은(설치), 김지선(영상, 미디어아트)
2015~2016	류노아(회화)
2017~2018	최원준(사진, 영상)
2018~2019	이미래(설치), 배수진(설치)
2019~2020	감동환(영상)
2020~2022	이성은(영상, 설치)

연도	참가 예술가 및 세부장르
2021~2023	최윤(시각)
2022~2024	정가희(영상)
2023~2025	이은새(회화)

7.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2인	인당 33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라익스아카데미)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1인) : €22,375
 - ※ 숙소, 재료비 및 제작비 등
 - ※ 해당 지원 내역은 라익스아카데미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접수 : 2023.9.1.~10.1. (접수마감 2023.10.1.(일) 23:59 CET Timezone)
 - 신청링크 : [네덜란드 현지 공모 추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별도 공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모사업 > 사업공모 > 공모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참고) 해외 협력기관 공모]

시각예술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네덜란드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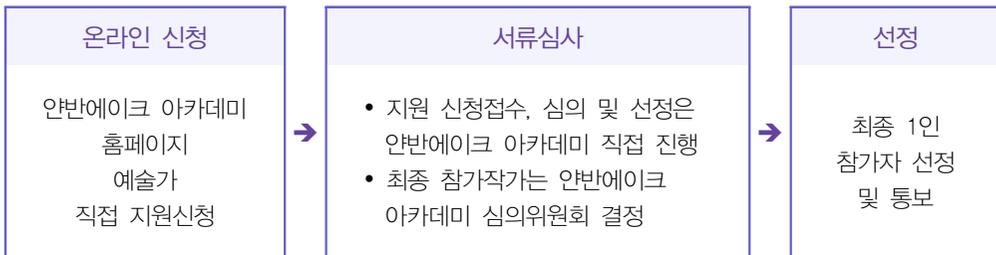
- 기존 교육과정을 마친 예술가 및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활동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지원을 통하여 시각예술분야 유망 한국 작가의 국제역량 강화 및 세계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창작활동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연령제한 없음(일반적으로 26~42세 참가)
- 이전에 다른 네덜란드 아카데미(라익스아카데미, 더 아틀리에, BAK, 선데이모닝@ekwc 등)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한 경험이 없어야 함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한국 참가자 선정은 안반에이크 아카데미에서 직접 신청·접수·심사 등 선정절차 직접 진행. 최종참가자 결정 후, 안반에이크 아카데미측에서 예술위원회에 직접 통보
- 참가자 선정 심사 절차



4. 사업개요

- 해외 협력기관 : 안반에이크 아카데미(Jan van Eyck Academie)
- 참가기간 : 2024.11월~2025. 9월(11개월)
- 주요 프로그램
 - 작품 활동, 개별 스튜디오, 전문가 미팅, 인렙 참여, 교류활동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안반에이크 아카데미(Jan van Eyck Academie)
- 소재지 :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 홈페이지 : <https://www.janvaneyck.nl/en/>
- 해외 협력기관 및 사업 소개
 -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위치한 포스트 석사과정 레벨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외부)전문가의 스튜디오 방문, 인쇄·사진·뉴미디어·나무·메탈·도서관·네이처리서치·푸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마스트리히트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워크숍과 토크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제공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작가 및 세부장르
2020-2021	소보람
2022	전혜주
2023	문서진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네덜란드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1인	31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안반에이크 아카데미)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16,750 (1인)
 - ※ 숙소, 재료비 및 제작비 등
 - ※ 해당 지원 내역은 안반에이크 아카데미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네덜란드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링크 : [네덜란드 현지 공모 추진시 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 061-900-221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참고) 해외 협력기관 공모]

무용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오스트리아 댄스웹 레지던스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의 젊은 무용가 및 안무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문 무용가 또는 안무가)
 - 22세 이상 30세 이하
 - 전문예술단체 공연 참가 실적 3회 이상 또는 연출(기획) 및 안무 작품이 1건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댄스웹 홈페이지(www.lifelongburning.eu)에서 직접 신청
 - 매년 10월 말 공지(주관처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 댄스웹 홈페이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 확정 공지 예정
- 지원심의 : 댄스웹 측에서 심의 추진 및 최종 선정자(1~2인) 공지
 - ※ 해외 협력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격자 없을 시 미선정

4. 사업 개요

- 해외 협력기관 : 댄스웹(danceWEB)
- 참가기간 : 매년 7월 10일~8월 14일 (주관처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
 - 임펠스탄츠 비엔나 국제 무용 페스티벌 기간에 약 5주간 진행
- 주요 프로그램 : 워크숍, 멘토링, 쇼케이스, 공연관람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댄스웹(danceWEB)
- 소재지 : 오스트리아(Austria) - 빈(Wien)
- 홈페이지 : www.lifelongburning.eu, <http://www.danceweb.eu/>
- 사업 소개 :

- 1996년 창설 이래로 89개국, 약 1,500여명의 전문 무용수와 안무가들이 참여하였음
- 개별 창작 프로젝트들을 조직하여 유럽 전체 무용계를 이끄는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5주간 진행되는 현대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매년 50~60여명의 세계 젊은 무용가와 안무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음
- 현대 무용계의 주요 인사를 코치로 초청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류, 지속적인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됨
- 세부 프로그램
 - 임펄스탄츠(ImPulsTanz) 리서치 프로젝트 참가(ProSeries 및 Coaching Projects)
 - 임펄스탄츠(ImPulsTanz) 테크닉 워크숍 참가
 - 임펄스탄츠(ImPulsTanz) 페스티벌의 모든 퍼포먼스 공연 무료 관람
 - 임펄스탄츠(ImPulsTanz) 참가 세계 우수 교수 및 안무가들과 아이디어 교환 및 교류
 - 지원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특별 프로젝트 참가 기회 제공
 - 댄스웹 데이터베이스 사용 및 등재
 - 강습 실연, 토론, 멘토링 등
 - 프로그램 전체 참가기간(5주간) 숙소 제공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 예술가	참가기간
2006	김영진	-
2008	서영란	-
2009	이은경	-
2011	장혜진	-
2013	박진영	2016.7.13. ~ 8.17
2017	김현신	2017. 7.12. ~ 8.16
2018	적격자 없음	-
2019	권혁	2019.7.10. ~ 8.14
2020	적격자 없음	-
2021	장경림	2021.7.14.~ 8.18
2022	이혜진, 정지윤	2022.7.6.~ 8.10
2023	이윤	2023.7.5.~ 8.9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오스트리아 댄스웹)	1~2인	인당 25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 그 밖의 현지체재비, 비자발급비, 보험가입비, 현지교통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오스트리아 댄스웹))
 - 프로그램 참가비 : €2,250 (변동 가능)
- 협력기관 지원항목(댄스웹 → 선정자 지원) : 스튜디오, 숙박시설, 프로그램 제공

7. 지원신청방법

- 오스트리아 댄스웹 홈페이지(<http://www.lifelongburning.eu>)에서 직접 신청

8.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 댄스웹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댄스웹에 직접 온라인 접수
 - 필수 첨부자료 : 이력서 1부(최대 2페이지), 최근 사진2매(증명사진 1매, 무용사진 1매), 추천서(최대 3부) 등
 - ※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에 관한 별도의 공지사항 참조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 : 061-900-2213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참고) 해외 협력기관 공모]

문화일반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EFA 신진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전 세계에서 선정된 35명의 축제기획자들이 7일간 축제기획·경영에 필요한 동시대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대간 지식과 경험을 전수
- 신진 축제기획자의 역량 강화 및 국제적 수준의 페스티벌을 기획할 수 있는 발판 제공

2. 지원신청자격

- 영어 의사소통에 능숙한 신진 축제기획자(Emerging Festival Manager)
 - 아틀리에 공식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소규모 그룹 토론 및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별도 나이제한 없음
- 비자 발급에 걸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EFA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예술위 홈페이지 수시 공지)
- EFA 심의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최종 1~2인 선정
 - ※ 2024년 지원대상 선정 완료

4. 사업개요

- 프로그램명 : EFA 신진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
- 해외 협력기관 :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페스티벌 아카데미(EFA The Festival Academy)

- 기관 소개
 -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 European Festival Association)은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되어 40개국 100여개가 넘는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다원 장르의 페스티벌, 협회, 기관 등을 대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 페스티벌 아카데미(The Festival Academy)는 EFA에 의해 2013년 설립되어, 신진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2006년 최초 시작)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thefestivalacademy.eu/en/home/>

- 참가기간 : 2024.1.7.~1.24.(7일 간)
- 장소 : 미국 뉴욕 (*개최지는 매년 변경)
- 주요 프로그램 : 강연, 토론,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 등의 7일간의 집중 프로그램
 - 매해 프로그램이 개최도시 및 선정 참여자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주제 구성

〈토의 주제 예시〉
 혁신적 리더십 / 큐레이팅, 관객 및 공동체 개발의 다양한 모델 / 디지털 혁신과 새로운 기술 / 축제의 사회, 환경, 예술적 영향(impact) : 어떻게 축제가 사회 변화나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는가? / 자금 조달(보조금 외) / 어떻게 축제가 국제적 정체성과 가치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 2005년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을 포함한 공정한 국제 협력(무역) / 축제와 과소대표되거나 취약한 공동체(유색인종, 원주민, 이주민/난민, LGBTQIA+,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 모든 단계에서의 지속가능한 축제 제작 /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보이콧의 관련성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개최지	참가 예술가
2013	레바논 베이루트	서상혁
2014	폴란드 포츠담	홍이지
	영국 에든버러	김세진
2015	레바논 베이루트	김지혜
	한국 광주	임현진, 오승연, 이채경
2016	헝가리 부다페스트	김민제
	태국 치앙마이	김혜린, 심현주, 이해련
2017	중국 상하이	김신우
2018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박현지
	스웨덴 예테보리	김주원
2019	몰타 발레타	장지영, 채민
2020	코로나-19로 인해 차년도로 연기	
2021	독일 뒤셀도르프	이호연, 이민형
2022	캐나다 몬트리올	김소현, 박준서
2023	그리스 엘레우시스	신효진, 이윤신
2024(*23.6월 선정완료)	미국 뉴욕	강영훈, 이은영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 ① 네트워크구축 (EFA 신진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참가)	2인	인당 320만원 내외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현지교통비
 - ※ 현지교통비는 광역 교통비(항공, 기차, 광역버스 등)만 편성 가능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프로그램 참가비(예술위원회 → 해외협력기관(EFA) 지급)
 - 프로그램 참가비 : €2,100 (프로그램 기간 중 숙박, 식사, 현지교통비 포함)
 - 프로그램 공식일정 전 후 숙박비, 비자발급비 등 명시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신청자가 자부담할 수 있음

7. 지원신청 방법

- EFA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영문)
 - '24년 사업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현지주관처 접수를 통해 선정 완료('23.6.13.)
 - 연도별 공지 시기 및 방법은 해외협력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술위 및 EFA 측 웹사이트 수시 확인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061-900-2214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유형 2 네트워크활용]
지정형 해외협력기관 프로그램 목록(총 2개소)

분야	구분	선정방식	비고
전통 예술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참가	(예술위) 후보군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56p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연계 특별행사 참가	(해외협력기관) 최종선정	158p

전통예술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유럽 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참가를 지원함

2. 지원신청자격

- 전통예술분야 예술가 개인(기획자 및 예술가) 및 단체
 - 개인 명의로 지원신청 할 경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프로젝트 그룹 구성하여 지원신청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1팀을 선정 및 파견
 - (예술위원회) 후보군 3~5팀 내외 선발 → (해외협력기관) 최종 1팀 선발

4. 사업개요

- 해외협력기관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La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 참가기간 : 2024. 5월 (예정)
- 프로그램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참가
- 공연장소 : Théâtre de l'Alliance française, Paris (예정)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기관명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 주소 : 101 Bd Raspail, 75006 Paris
- 홈페이지 : <https://www.maisondesculturesdumonde.org/>
- 사업 소개
 - 1982년에 설립된 프랑스 세계문화의집은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예술을 알리고 토속적인 전통예술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에서 주최하는 상상축제는 1997년에 시작되었으며, 공연·의례·퍼포먼스·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여러 전통예술을 소개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우리 위원회는 상상축제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의 판소리, 봉산탈춤, 씻김굿 등을 유럽 현지에 소개한 바 있음.

5. 역대 참가 예술가

연도	참가작가	비고
2019	조종훈	
2020~2021	-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2022	구슬주머니	
2023	나무령	

6.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② 네트워크 활용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참가)	1팀 (후보군 3~5팀 내외)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숙박료, 임차료, 통·번역비 등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해외협력기관 지원(해외협력기관 → 선정자 지급)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에서 공연 참여자 사례비 일부 지원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2_신청자(단체)명
② 프랑스 상상축제 참가 지원신청서 (영문)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Application Form for Festival de L'imaginaire_신청자(단체) 영문명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분야 : 061-900-2218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전통예술

유형 2 네트워크활용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연계 특별행사 참가

1.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프랑스 한국문화예술 확산의 중심점인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행사 개최 예정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계기 특별행사의 주제를 스포츠와 예술의 기원인 “놀이”에서 찾고, 이러한 성격을 지닌 공연작품을 현지에 소개하고자 함
- 2024년 전 세계의 폭발적 관심을 받을 프랑스를 무대로 우리의 흥겨운 문화를 소개하는 파리 올림픽 연계 특별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현지 내 한국공연문화 인지도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문화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신청자격

- 전통예술분야 예술가 개인(기획자 및 예술가) 및 단체
 - 한국 전통공연을 기본으로 하며, ‘놀이’를 주요테마로 하는 이번 프랑스 행사의 성격에 맞는 전통예술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개인 명의로 지원신청 할 경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공연자 10명 이상의 프로젝트 그룹 구성하여 지원신청

3.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협력기관 심의를 통해 최종 1팀을 선정 및 파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낭트 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심의 추진 예정)

4. 사업개요

- 해외협력기관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낭트 한국문화축제
- 참가기간 : 2024. 5월~6월 (예정)
- 프로그램 : 파리 올림픽 개최 계기 특별행사 및 낭트 한국문화축제 참가
- 공연장소 : 파리문화공간(실내공연장) 및 낭트 레 마신 드 릴(Les Machines de l'île/ 야외공간) (예정)
- 사업내용 : 특별행사 참가 및 현지인 대상 예술 워크샵 진행(총 3회, 회당 20명 예정, 전통 음악과 춤을 주제로 컨셉에 맞는 워크샵 추진)

※ 프로그램 세부 소개

1) 낭트 <한국의 봄> 축제

- 기관명 :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회
- 기간 : 2024.5.24.~6.2.
- 사업소개
 - 낭트 한국문화축제는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2013년 제1회 축제를 개최, 지난 10년간 낭트시와 주변 도시에 수준 높은 한국문화를 소개함.
 - 현지 주요 문화공간인 코스모폴리스(Cosmopolis), 스테레오룩스(Stereolux), 뤼(LU)극장 등과 협력하여 매년 5-6월에 전시, 공연, 컨퍼런스, 한식 등을 소개하는 복합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낭트 시민과 근교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축제 홈페이지 : www.printempscreen.com

2) 2024 파리 올림픽 개최 계기 특별행사

- 기관명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기간 : 2024. 5월-9월
- 사업소개
 - 1980년 창설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문화원으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재국 내 한국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계기 개최하는 특별행사의 주제를 스포츠의 기원이자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의 기원인 “놀이(Jeux)와 게임”으로 선정, 4개월 동안 국내 및 주재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전시, 공연, 워크샵, 강연회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예술 복합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문화원 홈페이지 : www.coree-culture.org

5.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선정 인원	지원규모	자부담
유형② 네트워크 활용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연계 특별행사 참가)	1팀	최대 5,000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참가 예술가 직접 지원액(예술위원회 → 선정자 지원금 지급/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 숙박료, 입차료, 통·번역비 등
 - 회계법인 회계검증수수료
 - ※ 회계검증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내 가이드라인 참조

- 협력기관 지원(협력기관 → 선정자)
- 현지 제공(음향, 조명 등 시설장비, 현지교통비, 식비 일부, 통역)

7.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_유형2_신청자(단체)명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분야 : 061-900-2218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국제예술공동기금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 '23.11월~12월 별도 공지 및 신청접수 예정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내 최종 공고문 공지 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제예술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합 및 재설계하였습니다.

예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은 그동안 한국과의 교류비중이 낮은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다년간 안정적인 양국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캐나다(캐나다예술위원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마지막 단계로서 한국-캐나다 간 협업사업(공동창작 발표 등)을 지원합니다.

* '22년 1년차 준비단계(파트너 국가 및 기관 선정) → '23년 2년차 리서치단계 → '24년 3년차 협업사업단계

[지원 방향성]

기존		변경		
(우수 프로젝트 창작·발표 중심)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경쟁력 제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심)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예술교류 모델 발굴”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전략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예술인/단체의 해외 진출, 공동창작 및 협업 지원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1. 사업목적

-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전략적이고(특정국), 안정적인(공동기금)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캐나다예술위원회와 MOU 체결('22.11.30)을 통해 2023~2024년 2년간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발굴로 북미 지역 내 진출 플랫폼 외연 확장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한국-캐나다간 공동의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간 협업사업 발표 지원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 :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 신청대상 : 2024년 한국-캐나다 문화예술 협업사업 추진 예정인 전 장르 예술가 및 단체

○ 지원내용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를 기반으로 한국-캐나다 예술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 혹은 캐나다 내 협업사업 추진
-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2년차를 맞이하여, 단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양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사업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관객들과 예술계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

[유의사항]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중복 선정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캐나다예술위원회 Canada-Korea Connections Fund,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 2024년 총 지원예산 :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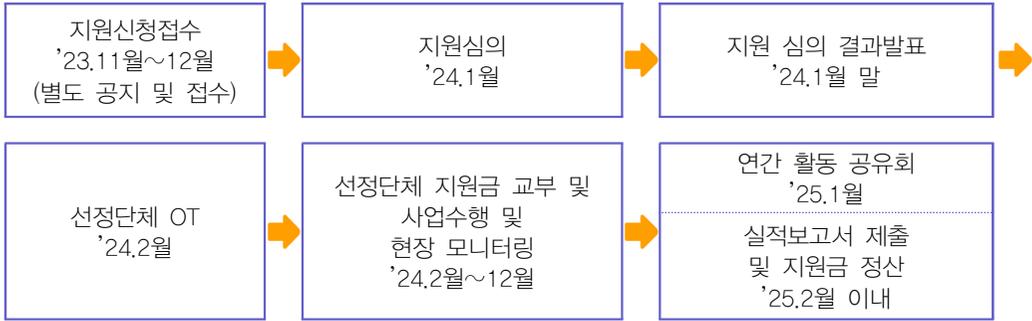
○ 지원규모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협업사업	최대 8천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5건 내외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사업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점검 추진 및 연간 활동 성과공유회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협업을 위한 제반조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신청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있는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지원신청자의 이전 활동 실적 및 성과를 볼 때, 안정적 사업수행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추진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맞게 항목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협업구조(교류조건, 균형있는 역할 및 예산배분 등)가 적정하게 반영된 예산계획인가?
사업 우수성 및 교류 타당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 사업기획이 독창적이고, 국제적 협업관점에서 우수한 사업인가? •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일회성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전 준비 혹은 사후 확장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리서치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의 경우, 주요 성과 및 진행현황 제시 • 신청사업의 캐나다파트너는 해당 협업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국제적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양국의 예술계와 관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 재료, 제작, 설치, 운송비 • 홍보 및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사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사업수행 중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만 사례비 편성 가능(총사업비 10%) • 회계검사수수료 : 편성 의무 (지원신청 공통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 영유아 돌봄비 : 취학 전 자녀 시간당 1만원, 80만원 기준 편성 가능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및 장비 임차료 	
	공공 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급 수수료 • 보험료 (작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 우편요금 	
여비	국외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
	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인바운드 사업 및 국내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 교통비 (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연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2023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2022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2021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요약본(영문) 1부
- <필수>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1부.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바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심의 감점>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061-900-2211, 2203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정책영역

일자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현장예술인력지원	2023.10.4.(수)~10.30.(월) 18:00 마감	문학·시각예술	061-900-2212	169
		공연예술	061-900-2332 061-900-2335 061-900-2339	
		문화일반	061-900-2216 061-900-2338	

현장예술인력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청년 신규채용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술인력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초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3개의 지원사업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수요인력을 계획하고 지원 신청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원신청 등 중복된 절차를 일원화하여 단체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사회 안전망 제도인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법정최저임금 준수,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 공공기금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종사자가 상생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신청방식	• 3개 사업 개별 지원신청	• 단일 통합사업으로 지원신청
신청규모	• 지원사업별 신청인원 제한	•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최소 1명~ 최대 8명, 신청 및 지원)
지원내용 변경사항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 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지원조건 상이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 연수단원과 무대기술인턴 지원조건 통일
	(문화예술 연수단원) • 연수단원 반복참여 1회(12개월) 제한 • 국공립 기획경영, 창작실연 신청	(문화예술 연수단원) • 연수단원 반복참여 2회(24개월 이내) 허용 • 국공립 창작·실연 직종만 신청 가능
	(공연예술 전문인력)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다년간 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 • 사업통합에 따른 다년간 지원식 폐지 (단,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 2개년 선정단체 유지)
사업관리	• 지원사업별 인력 관리 및 집행 • 지원사업별 단체 활동 모니터링 및 환류	• 단체별 지원인력 및 성과 관리 • 단체별 지원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1.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육성·진입
- 신규인력 및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p>〈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연수단원 : 단체에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10개월) 지원 • 무대기술 인턴 : 단체에 무대기술 입직희망자 신규채용 인건비(10개월) 지원 • 공연예술 전문인력 : 민간예술단체에 전문인력 인건비(10개월) 지원

- 신청 대상 :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단체 대표자 제외 '상근인력 1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 중인 단체 (상근인력 : 현재 근무 중이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신규채용 및 단체 소속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직군별 단체 자격조건

-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인력(만 34세 이하)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하여 현장예술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직무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 무대기술 분야 신규인력(만 39세 이하)을 무대기술 인턴으로 채용 후 무대기술분야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근로자(만 59세 이하)로서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상근인력을 채용한 공연예술단체

직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인력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
단체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창작·실연 직무만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소유·임차 운영 공연단체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을 (3급 이상) 보유 또는 무대예술 3년 이상 경력 근로자 소속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소유·임차 운영 공연단체 및 공연장
지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4세 이하 (1990.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4.2월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무대기술 분야 입직 희망자 • 단체 소속 기존 근무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9세 이하(1965.1.1. 이후 출생자)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을 (3급 이상) 보유자

※ 단체자격 유의사항

- 채용인력 자격요건 준수 및 공개채용 원칙 준수 (* 사업수행가이드 추후 별도 안내)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채용인력은 공개채용 선발 (* 단체의 기존 또는 과거 근무자 채용 불가)
- 채용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채용인력 4대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 자부담 필수
- 채용인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과 지원사업 회계검증 수수료 자부담 필수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기존 또는 과거 단체 근무자를 지원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고용관련 법규 위반단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의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단체는 확인될 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됩니다.

- 지원규모 : 신청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지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4명 (→ 기획·경영, 창작·실연 두 직종에서 신청인원, 직종 복수선택 가능)
 - *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연수단원 신청은 '창작·실연' 직종만 신청 가능
 - 무대기술 인턴 : 3명 (→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중 복수선택 가능)
 - 공연예술 전문인력 : 1명 (→ 공연기획·경영 및 무대예술분야 중 선택)

직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인력	
	예술기획·경영	예술창작·실연	무대기술	공연기획·경영	무대예술
지원 인원	최대 4명 (자율선택)		최대 3명 (자율선택)	최대 1명 (직종 중 택1일)	
지원 내용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024년 3월~12월(10개월) • 지원액 : (민간) 월 207만원 / (국공립) 월 187만원 				
	구분	지원금	자부담	최소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2024년 3월~12월(10개월) • 지원금 : 월 180만원
	민간	2,070,000원	-	2,070,000원	
	국공립	1,870,000원	200,000원	2,0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급여액 이상 단체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지원금 이외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추가 급여 등 					

※ 신청인력 유의사항

- 지원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지원인력 인건비는 2024년 법정최저임금(월 2,060,740원) 이상 지급 및 지원금 이외 금액은 단체의 자부담 필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 결정
 - 연수단원의 경우 장애인 및 비장애인 1:1 매칭 지원 유지 (장애인력 최대 신청 가능 인원수 2명)
 - * 예시) 장애인 1:1 매칭으로 단체에서 장애인력 2명 채용 신청시, 비장애인력 2명 지원 결정
-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2개년 선정단체는 2024년 지원결정 (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취소 가능)

참고 : 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

직군	직종	세부 직무
문화예술 연수단원	예술기획·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경영기획 : 기획·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예술창작·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제작 : 출판기획 및 제작, 교정, 교열, 번역 등 •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등
무대기술 인턴	무대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공연예술 전문인력	공연기획·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경영기획 : 기획, 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무대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무대감독

○ 2024년 총 지원예산 : 12,496,680,000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8,186백만원, 423명 규모 선발 예정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 지원 : 500백만원
- 무대기술 인턴 : 1,248백만원, 62명 규모 선발 예정
- 공연예술 전문인력 : 2,563백만원, 142명 규모 선발 예정

○ 사업추진체계

- 단체 채용 및 채용인력 검증 (전공 졸업여부, 경력 충족여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검토 등)
- 문화예술분야 잡마켓 개최, 현장예술인력 직무교육 진행
- 지원단체 및 지원인력 전수 모니터링 참여 필수, 평가결과 차년도 지원심의에 환류
- 연수단원 참여인력 대상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진행(안)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대상 :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최근 3년 이내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전환인력의 하반기 인건비 50% 6개월 지원(지원 상한액 월 1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배점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지표 1] 단체의 2024년 신청인력 운영계획 - 단체의 신청인력에 대한 직무(역할)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 단체는 신청인력의 경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가?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지표 2]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 단체는 2024년 주요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 - 단체는 신청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또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지표 3]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과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주요 예술 창제작 및 활동은 우수한가? ※ 2023년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작성 필수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지표 4] 2024년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은 효과가 기대되는가? ☞ 효과 : 문화예술시장 기여도 및 파급력, 예술가치 확산 등 제시 	20점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배점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지표 5] 단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수 -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 조회기간 : 2022.10.1. ~ 2023.9.30.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지표 6] 예술의 지속가능을 위한 단체의 인적 투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전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 (필수제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지표 7] 단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 미제출 시 해당 지표 0점 부여 	5점

- ※ 본 심의기준 및 지표는 사업운영 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정량지표는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지원심의 반영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제출)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 없음) •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조회기간 : 2022.10.1.~2023.9.30.)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 예술인고용보험은 해당 없음) • (해당 시 필수제출) 무대기술 인턴 신청 단체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등록증 또는 공연장 임차계약서 - 공연장 상근인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또는 경력증빙자료(3년 이상 필수)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4. 문의처

○ 일자리기획부

- 문학, 시각분야 문의 : 061-900-2212
- 공연예술분야 문의 : 061-900-2332 / 2335 / 2339
- 문화일반분야 문의 : 061-900-2216 / 2338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정책영역

청년예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2023.10.4.(수) ~ 10.30.(월) 18:00 마감	02-760-4681 02-760-4559		179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18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	02-760-4556	189
		시각예술	02-760-4568	
	연극뮤지컬/무용/다원예술	02-760-4642		
음악/전통예술	02-760-4661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3월 별도공모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시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은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대학(원)에서 교육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은 물론 기획, 제작, 기술, 행정, 홍보 등 보다 넓은 영역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대학과 예술현장 간 연계를 통해 예비예술인의 졸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지원”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지원” → “(대뷔한 개인에 대한)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술대학(원)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지원신청자)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활동 등을 기획하여 제출

(지원선정자) 사업 수행 및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결과물 제출

(사업수혜자/예비예술인)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에 참여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비 지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대상 :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성립]

-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대학(원)+문화재단, 대학(원)+공연장, 대학(원)+전시장, 대학(원)+출판사, 대학(원)+기업(후원), 대학(원)+타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등 복수 가능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원)에서 중복신청 가능하며, 최대 2건까지 선정
- 총괄책임자와 컨소시엄 단체의 동일 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사업 총괄책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위탁용역 기관과의 컨소시엄 불가

○ **지원내용** :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비용 지원

* 예비예술인 : 예술대학(원) 재학생(예술프로젝트를 위한 타과생 협력 가능)

* [지원대상 사업예시] 예시이며, 심의와는 무관함

- 예시 ①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공연단체, C미술관, D페스티벌, E극장, F재단 등 현장 실습과 창작 + (학교밖)G미술관, 공연장 발표(→A예술대 교과목 개편)
- 예시 ② A예술대 학생 + (지역내/외)B예술대 학생 + 자원공유 + (학사연계)공동창작, 극장, 미술관, 페스티벌 참가(→A/B예술대 교과목 개편)

* [지원 유의사항]

- 전체 참여인력 중 참여 예비예술인의 비중이 90% 이상(최소 40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 및 합리적인 처우(창작사례비)를 제공해야 함
- (**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 단순 작업 및 교내 발표지원 불가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 **2024년 총 지원예산** : 3,000백만 원

○ **지원규모** : 최소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22p) 확인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2차) 심층 인터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중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외 지역 대학 주관 및 참여 우대 - 복수의 대학 참여 우대 - 주관기관 교수진의 의지 및 참여구조의 안정성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주관기관과 참여단체의 의지, 상호 간 연계성 및 참여 수준(자원 공유 등) - 정규교과목 신설 또는 개편 의지 - 교과연계(학점 인정 등)를 통한 학생 관리
계획의 충실성 (40%)	경험의 질적 수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경험을 위한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성장 및 확산 연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예술인의 경험이 이후 예술가로서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될 수 있는가? 전업예술, 인턴십, 연수단원, 일자리, 창업 등과의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교 밖 지역주민과의 향유 확산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추진 행정인력 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 (기획자, 창작자, 기술지원, 멘토링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작품 운송비, 설치비, 철수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예외 사업임

[지원금 유의사항]

- 행정인력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로 편성 가능하며, 일반수용비(사례비)로 지급 불가
- 전임교원에 대한 인건비, 사례비 책정 불가
- 간접비(일반관리비) 책정 불가
- 사업추진비는 1% 이내로 편성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동협업 수행 협약서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6. 문의처

○ 예술인력양성부 : 02-760-4681, 4559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3월 별도공모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시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은 예비예술인 발굴 실적이나 예비예술인과의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표이력이 없는 만29세 이하 예비예술인”에게 최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성장과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데뷔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예술인의 예술현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적인 청년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지원”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지원” → “(데뷔한 개인에 대한)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비예술인 발굴 및 최초 발표 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진입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지원신청자) 다양한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을 발굴 및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성장·확산 연계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여 제출
- (지원선정자) 사업 수행 및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 (사업수혜자/예비예술인) 예술단체가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비용 지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대상 :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

[컨소시엄 성립]

- 민간예술단체+타 민간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민간예술단체+공연장, 민간예술단체+전시장, 민간예술단체+출판사, 민간예술단체+기업(후원) 등(복수가능)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예비예술인 발굴주관 민간 예술단체에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는 민간 예술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홍보, 교육 대행 등 위탁용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불가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과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에 참여하는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
- 대표자 명목이 동일한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예) 단체A(대표 김문화)+단체B(대표 김문화)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세부 자격기준** : 최소 1년 이상(2022.9.25. 이전 사업자등록)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을 발굴하여 예술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연계 프로그램(멘토링, 국내외연수, 네트워킹, 작품발표 등)과 확산연계 프로그램(아카이빙, 관객심사, 작품판매, 향유, 성과공유 등)을 지원

*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의 발표이력이 없는 예비예술인(1994.1.1. 이후 출생자)

* [지원대상 사업예시] 예시이며, 심의와는 무관함

- 예시 ① [A예술단체]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B극장 /C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A예술단체]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선정자 심층 멘토링 + 국내외연수 + D극장, E미술관 매체에서의 후속발표 지원 → [F문화재단/기업] 후속작업 후원
- 예시 ② [A/B/C 예술단체] 공동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페스티벌 개최 → [D/E기업] 홍보마케팅 + 후속작업 후원
- 예시 ③ [A청년예술단체]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단체] 예비예술인 간,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지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지역 내 신규 C 청년예술가 단체 결성
- 예시④ [a지역 A예술단체/b지역 B예술단체] 공동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멘토링 + 네트워킹 + 전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지원 유의사항]

- 전체 참여인력 중 참여 예비예술인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 및 합리적인 처우(창작사례비)를 제공해야 함 (**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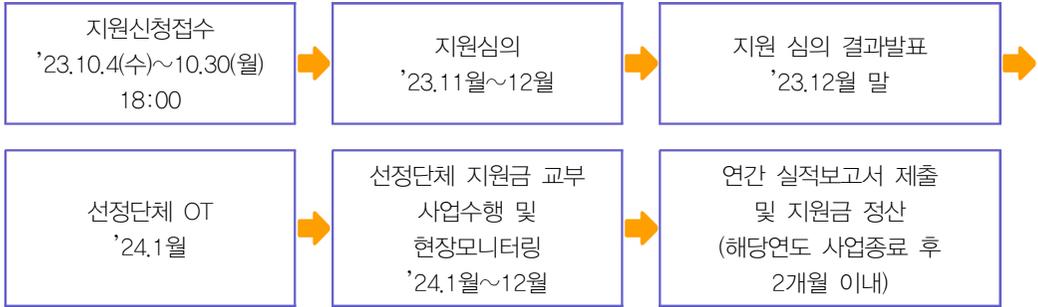
○ **2024년 총 지원예산** : 1,000백만 원

○ **지원규모** : 최소 5천만 원 ~ 최대 1억 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 지원신청 공동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22p) 확인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2차) 심층 인터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외 지역단체 주관 및 참여 우대 - 주관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및 확산 역량 - 컨소시엄 소속단체의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 - 주관단체의 네트워킹 및 과정 관리 역량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계획의 충실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현장 진입에 기여하는가? • 예비예술인이 발표하는 매체·공간과 실제 예술 현장이 유사한 환경인가? • 제공하는 네트워킹 경험이 예비예술가의 이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성장 및 확산 연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한 예비예술가의 멘토링, 국내외연수 등 성장지원을 위한 관리 계획이 적정한가? • 추진과정에서의 향유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예비예술가의 창작 성과를 아카이빙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새로운 예술 담론과 방향을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창작자, 기술지원, 멘토링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작품 운송비, 설치비, 철수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숙박비
	국외여비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동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예외 사업임

[지원금 유의사항]

- 주관 및 컨소시엄 단체 소속 인력 사례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로 편성 가능
- 사업추진비는 1% 이내로 편성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동협업 수행 협약서
- ※ 지원신청 공동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6. 문의처

- 예술인력양성부 : 02-760-4681, 4559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통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을 시작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많은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현장에서 진입단계 청년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시작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진입 첫” 보단 “진입 후 N차”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민간현장과 의 연계를 꺾고, “그룹”이 아닌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도 4백~25백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강점인 간접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아르코영아티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전용공간을 지원합니다. 최대 4천만원이었던 지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창작·기획 외 실연을 포함하여 지원범위는 더욱 넓혔습니다. 청년예술가 여러분의 도약에 예술위원회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지원”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지원” → “(데뷔한 개인에 대한)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을 독려하여,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지원신청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계획과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지원선정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발표 결과물 제출
- (예술위원회) 작품 제작 및 발표 비용 지원, 아르코영아티스트랩(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제공

- 신청대상 : 예술계에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4.1.1. 이후 출생자)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 세부 자격기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을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연자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 발표 이력 : 학내 행사(워크숍, 전시, 공연 등)는 제외하며, 해당 자격에 대한 명확한 증빙 (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보도기사 등)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공고문 하단의 <지원신청 유의사항> 참고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의 작품 발표 과정 지원

-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 필수조건 : 2024년 국내/국외 공개적인 외부 작품 발표 의무
- * 지원불가 :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의 활동계획으로 신청한 사업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업 공동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 2024년 총 지원예산 : 2,736백만원

○ 지원규모

분야	지원규모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최소 2천만원~최대 4천만원 범위 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
문학	1천만원 동일금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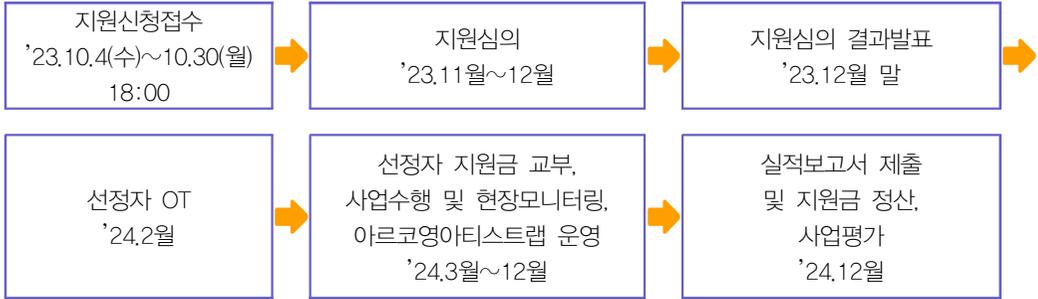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편성 제외 사업임(직접 경비 실비 지원)

※ 지원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결정액은 지원신청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 국외 발표 사업의 경우에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아르코영아티스트랩(청년예술가 대상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지원
 - *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전용공간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1층에 위치함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평가결과 심의 환류
-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22p) 확인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활동실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총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예산 편성과 보조금 정산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제작비(의상·무대·소품·홍보물 제작, 작품 운송·설치·철수에 필요한 제작비) 소모품 구입 및 작품 재료비 출판·인쇄비 통·번역비 도서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자 본인 창작 사례비는 최대 250만원 이내 또는 총 지원결정액의 10% 한도로 편성 가능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서 체결, 원천세/예술인고용 보험 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화 ※ 도서구입비 최대 30만원 한도 편성 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

비목	세목	항목	비고
		•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국외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외여비 편성 가능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문학 분야 / 문학 외 분야 유형 중 선택하여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국외발표 필수>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 * (예시)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②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서면 10p 이내)
 - 본인의 예술표현활동 최소 1회 이상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 * 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의무
 -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동영상 등 링크 주소 작성 시 하이퍼링크 설정 필요)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19p) 확인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문학) 02-760-4556
 - (시각예술) 02-760-4568
 - (연극/뮤지컬, 무용, 다원예술) 02-760-4642
 - (음악, 전통예술) 02-760-4661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중복수혜 불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 선정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통합된 사업으로, 이전 사업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2019~2023년)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2016~2023년) 수혜이력도 본 사업의 지원실적으로 포함하여 적용함.
 (단,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중간발표 탈락자의 경우 지원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예시]

- ① 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 지원횟수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② 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23년 창작산실 사업 선정 :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③ 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 2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④ 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선정, 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선정 : 3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ARTS COUNCIL KOREA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정책영역

향유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신나는예술여행	2023. 10.4.(수)~10.30.(월) 18:00 마감	아동	061-900-2253 061-900-2247 061-900-2258	197
		청소년	061-900-2254 061-900-2261	
		노년	061-900-2251	
		장애인	061-900-2255	
		특수	061-900-2245	
		일반	061-900-2262 061-900-2246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02-3668-0013 02-3668-0056		211

신나는예술여행

신나는예술여행은 예술향유 혜택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이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감상, 체험 활동을 통해 예술로부터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프로그램 배정과 관련하여 예술단체가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문처 발굴 기회 부여, 방문 횟수 선택권 추가,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방문시설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시설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건강 상태, 비용 부담, 특수한 신분(군복무 등)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한 감상 및 체험 프로그램
- **2024년 사업예산** : 128억원
- **지원 분야 및 유형**
 - 신청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신청유형 :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특수, 일반 6개 대유형 중 택 1
- **신청자격** : 민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 ※ 신나는예술여행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단체 중 부정수급 및 장기미정산 등 내역 보유 단체는 선정 및 교부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신청 유형 상세

- 6개 대유형 중 1개 대유형만 선택, 세부 유형은 복수 선택 가능
- 분야(장르)는 유형 분류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기존 세부 유형 외 시설 및 해당 유형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타 대유형 시설의 수요 충족을 위해 방문처 세부 유형 확대
- 6개 대유형 24개 세부 유형 분류 현황

대유형	세부 유형
I. 아동	① 아동양육시설
	② 초등학교
	③ 지역아동센터
	④ 아동 기타 시설
II. 청소년	⑤ 중학교
	⑥ 고등학교
	⑦ 대안학교
	⑧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
	⑨ 청소년 기타 시설
III. 노년	⑩ 노인복지관
	⑪ 요양병원
	⑫ 노년 기타 시설
IV. 장애인	⑬ 장애인 특수학교
	⑭ 장애인 복지관
	⑮ 장애인 기타 시설
V. 특수	⑯ 교정시설
	⑰ 군부대
VI. 일반	⑱ 병원
	⑲ 종합사회복지관
	⑳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㉑ 임대아파트
	㉒ 산업단지
	㉓ 북한이탈주민 시설
㉔ 일반 기타 시설	

※ 대유형 별로 기존에는 없었던 ‘기타 시설’ 세부 유형을 공통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예술단체의 방문처 발굴 수요를 충족하고, 시설 거주·이용 수혜자의 문화 향유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운영을 도모함. 기타 시설 등 세부 유형별 특징은 표 ‘6.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중 ‘방문처 유형별 특징 및 고려 사항’ 참조

○ 지원 내용

- 참여자 사례비, 이동 경비, 프로그램 장비 임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직접 수행 경비 일부 지원
- 사전 조사 및 자체 모니터링 등 조사연구 활동 경비 일부 지원
- 안전보험 가입비, 자녀돌봄비(선택) 등 사업 참여 여건 개선, 복지 비용 포함

○ 지원규모 및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회 지원금	지원심의에서 회당 지원 금액 결정	회당 최소 4백만원~ 최대 8백만원
총 지원결정액	매칭, 배정 결과 횟수에 따라 총 지원결정액 확정	회당 지원액 x 프로그램 지원 횟수
프로그램 진행 횟수	예술단체별 15회 이내 진행	방문처의 프로그램 신청 결과에 따라 횟수가 결정되며 신청이 저조할 경우 15회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음
프로그램 진행 장소(전국)	방문처의 신청과 매칭 결과에 따라 단체 소재지 인접 지역 또는 원격지에도 배정될 수 있음	방문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 가능 * 선정 후 방문처와 협의 단계에서 필요 시 예산 변경 가능

○ 방문처 배정 방식 : 매칭형, 매칭·발굴혼합형 선택

방식	내용	비고
매칭형	예술단체 선정, 수요자 프로그램 신청 결과를 기반으로 일괄 매칭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23년 적용 방식
매칭·발굴 혼합형	일부 회차에 대해 방문처 자체 발굴 후 등록 - 발굴 방문처는 동일 대유형 범위 내에서 발굴 원칙 - 수행 회차의 30% 이내 회차 자체 발굴 가능 (예 : 15회 수행 단체는 4개 회차까지 자체적으로 방문처 섭외, 사업 추진 가능)	지원 결정 후에는 매칭형으로 변경 불가

※ 예술단체와 방문처 간 배정 성사율이 계획 대비 미달될 경우, 배정률을 높이기 위해 세부 유형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지원 회차 설정

- 지원심의를 통해 프로그램 1회당 4백만원~8백만원 사이에서 지원 기준 금액 결정
- 배정된 횟수에 따라 총 지원결정액 결정(1회당 지원금액 x 횟수)
- 방문처 당 1회 방문, 진행 원칙
- 지원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 횟수 선택 가능(7~15회)

구분	내용	지원 총액
고정형	신나는예술여행 표준 배정 회차수 15회 선택	1회차 기준금액 x 15회
선택형	예술단체가 배정 희망 회차수 선택(7~14회 범위 내) (예: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2회, 배정 유형을 매칭· 발굴혼합형으로 신청한 경우, 단체 자체 발굴은 3회, 일괄 매칭으로는 9회 배정)	1회차 기준금액 x 희망 횟수

※ 선정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처 수요부족 및 회차 취소 발생 시, 지원 회차 조정 및 추가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예산 계획은 1회당 소요액을 기준으로 회차를 적용하여 책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리서치, 사후 자체 평가 등 조사연구 활동 관련 일부 경비 지원 가능
- 예산편성항목 및 편성 기준

비목	세목	집행항목	편성 기준(회당)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는 1인당 20~80만원 내 편성 • 식비는 사례비에 포함하여 편성 • 행정인력 포함 가능(1명 이내) • 한 명이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적인 역할로 신청(사례비 중복 편성 불가)
		영유아돌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참여인력(1회성 참여자 제외)은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둘 이상 자녀의 경우 각각 영유아돌봄비 책정 가능) • 1시간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내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X배너,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 회 당 10만원 편성(전체 공통) • 홍보물은 다회용으로 제작, 활용 권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 소모품 구입비 • 비품,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 방문처, 관객 제공용 선물 구입 불가
		회계검증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6만원 편성(공통) • 교부 시 지원결정액 범위 별 정액 책정

비목	세목	집행항목	편성 기준(회당)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 회당 5만원 편성(추후 실비로 조정) • 시각예술 작품 보험료 편성 가능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운용, 전시설치 등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임차료 (07)	무대장비(조명, 음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가 필요한 장비, 공간에 대해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습실 등 공간 임차의 경우,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관련 임차만 가능하며, 단체 운영을 위한 임차 불가 ※ 연습실은 전화차 총합 50만원 내에서 이용 단가 및 회차 책정
		공간(연습실 등)	
		차량(현장이동용)	
기타(악기 등)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 참여자 1인당 5만원 편성 • 방문처 확정 후 회차별 예산 계획 수립 • 식음료비 별도 편성 불가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필수)
-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공유회 추진
- 현장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차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연계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평가결과 심의 환류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답사 보고, 프로그램 진행 보고서 관리 • 2024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사업 추진(*24.5월~12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현장 평가 진행(평가자 2명 이상 참여) - 방문처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전수 설문 등 진행 - 평가결과는 차년도 이후 예술단체의 신나는예술여행 공모 참가 시 심의에 적용 • 예술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병행

○ 기타 유의사항

- 2024년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내에서 동일 단체에 대한 선정은 1건에 한함.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전체 범위에서의 중복지원 및 다중선정 제한 조건은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참조
- 한 단체가 복수의 대유형 신청 불가
 - ※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특수, 일반 대유형 중 대유형 1개만 선택
- 신청 예술단체가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제출자료(지원신청서 및 동영상) 등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 기준

- 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저작권 상 제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저작권 및 인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단체에 있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지원결정 후이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집행 내역 및 규모는 중요한 심의 기준이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심의 시 확정된 사례비 지급 대상 및 인원수, 지급 단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실현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신청서 계획 상의 인력이나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심의위원회의 사업변경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부적정 평가 시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또는 지원결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신나는예술여행 누리집에 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서, 진행 영상, 현장 참여자 사진 등을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 ※ 현장 참여 여부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비용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서류) 및 프로그램 진행 동영상을 토대로 전문가 심의
- 심의절차 : 심의위원 사전 검토 → 심의위원별 채점 → 고평점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유형별 신청건수를 고려한 복수의 분과로 심의위원회 구성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분야로 전문가를 안배하여 구성
- 지원심의 기준

심의 기준	비중	세부 평가 내용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수혜 대상자(유형)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하고 눈높이에 맞게 기획되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몰입감 및 예술적 체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
프로그램 수행계획의 적합성과 구체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사업비(1회당 사업비)의 규모와 세부 집행 항목 및 금액 책정 내용이 타당한가?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활용 및 연출 계획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 (매칭·발굴혼합형 신청단체) 신청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사업수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방문처 발굴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가?

심의 기준	비중	세부 평가 내용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력의 수와 역할 구성, 역량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신나는예술여행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 과거에 본 사업에 참여한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전 대비 개선 계획이 충실한가? • (신나는예술여행 선정 이력이 없는 단체) 신청 단체의 활동 이력 및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창의적이고 참신한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창작산실 등)의 지원으로 5년 이내(2019년~2023년) 창작, 발표된 작품을 보유한 예술단체가 해당 작품으로 지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4.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기한 : 2023. 10. 4(수) ~ 10. 30(월) 18:00 마감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폭증에 따른 파일 업로드 지체 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 발표 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제출 자료

분야	제출 자료
문학,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해당시 필수) 사업참여동의확인서 • (선택) 동영상 또는 이미지 파일 1건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해당시 필수) 사업참여동의확인서 • (필수) 동영상 파일 1건

- 필수 자료 미제출 또는 양식 미준수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와 동영상은 아래 제출 방법(파일명, 형식, 제한 용량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파일 구동 오류 여부 확인 후 제출

○ 신청서 작성 방법

- 유형 선택 : 방문처 6대 유형 중 1개, 하위 세부 유형 중 복수 선택하여 신청

○ 제출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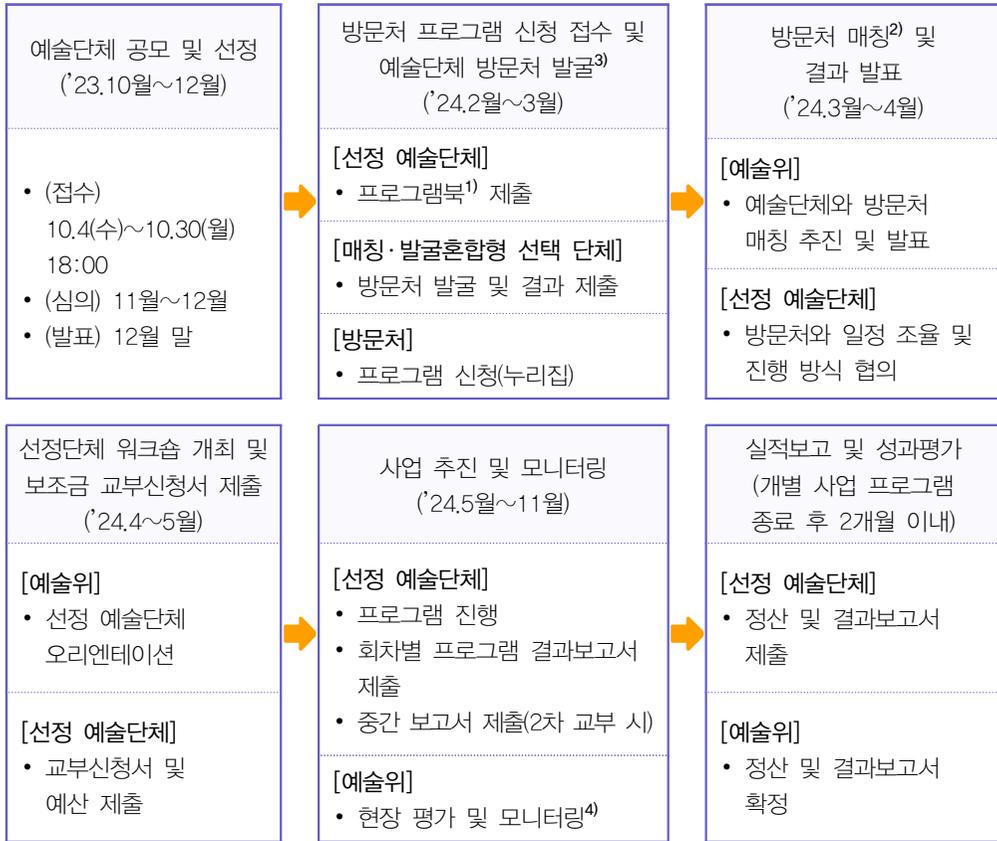
제출 자료	제출 방법										
지원신청서 1부 * PDF 파일 제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분야별 지원신청서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하여 작성) <table border="1"> <tr> <td>파일 형식</td> <td>한글(HWP) 프로그램 파일</td> </tr> <tr> <td>파 일 명</td> <td>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hwp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hwp</td> </tr> <tr> <td>파일 용량</td> <td>2MB 이내 (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td> </tr> </table>	파일 형식	한글(HWP) 프로그램 파일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hwp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hwp	파일 용량	2MB 이내 (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파일 형식	한글(HWP) 프로그램 파일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hwp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hwp										
파일 용량	2MB 이내 (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사업참여 동의 확인서 1부 (해당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8쪽 '참여 예술인력의 역할 및 주요경력' 중 '참여동의확인서 제출 여부' 항목과 연계 제출에 해당하는(○표시) 인력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동의확인서(신청서 서식 마지막 별첨 양식)에 날인을 받아 스캔하여 첨부 <table border="1"> <tr> <td>파일 형식</td> <td>PDF 파일</td> </tr> <tr> <td>파 일 명</td> <td>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참여동의확인서).pdf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참여동의확인서).pdf</td> </tr> </table>	파일 형식	PDF 파일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참여동의확인서).pdf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참여동의확인서).pdf						
파일 형식	PDF 파일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참여동의확인서).pdf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참여동의확인서).pdf										
동영상 파일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필수)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선택) 문학, 시각예술 <table border="1"> <tr> <td>파일형식</td> <td>MP4</td> </tr> <tr> <td>파 일 명</td> <td>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mp4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mp4</td> </tr> <tr> <td>파일용량</td> <td>100MB 이내(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td> </tr> <tr> <td>재생시간</td> <td>7분 내외</td> </tr> <tr> <td>파일내용</td> <td>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의 실황, 시연 영상자료</td> </tr> </table>	파일형식	MP4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mp4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mp4	파일용량	100MB 이내(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재생시간	7분 내외	파일내용	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의 실황, 시연 영상자료
파일형식	MP4										
파 일 명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대유형)_단체명.mp4 예: 2024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아르코극단.mp4										
파일용량	100MB 이내(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재생시간	7분 내외										
파일내용	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의 실황, 시연 영상자료										

○ 동영상 파일 제출 유의 사항

- 제출 대상 영상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 지원한 프로그램 실연을 담은 영상물
※ 신작 작품의 경우, 정식 공연 영상 외 리허설, 쇼케이스 등 준비 과정 상의 공연 영상 제출 가능
- 화면 해상도가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거나 신청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 시 사업내용 파악에 어려울 수 있음

- 단순 단체 소개 및 홍보영상, 단체의 주요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등 프로그램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을 담은 내용은 부적합
- 동영상은 프로그램의 내용, 예술성, 진행 규모 파악을 위한 것으로 동영상의 제작 수준 (화질, 음향 등)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참고 사항>

- 1) 프로그램북 : 방문처 매칭 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안내 내용을 사업 홈페이지(www.artstour.or.kr)에 공개, 수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디지털 책자
- 2) 방문처 매칭 : 예술단체의 프로그램북을 방문처에 공개한 뒤 선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적절하게 배정하는 절차로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약 3~4개월 소요
- 3) 방문처 발굴 : 예술단체 스스로 시설들을 탐색, 섭외하여 방문처와 일정을 결정함
- 4)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서면 모니터링하고, 전문 평가단 및 세부 유형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관, 방문처 면담 등을 통해 평가 진행

6.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 공통 고려 사항

- 신청 프로그램의 예술성, 참여 인력의 역량과 더불어 향유 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의 프로그램 내용, 진행방식 기획이 중요
-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및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획이 중요
- 방문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음

○ 방문처 유형별 특징 및 고려 사항

방문처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진행 장소
아동 유형		
아동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에는 유아에서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거주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양육시설 유형의 주 대상은 초등학교 이하 아동으로 함 • 시설 당 평균 10~30명의 유아, 아동, 청소년이 참가 • ‘거주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 중요, 시설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등 - 필요 시 야외공간 활용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공간(면적, 높이 등) 및 시설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비 필요 •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별 발달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저학년(1~3학년)/고학년(4~6학년) 구분 등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협소한 공간이라는 점 고려 요망 ※ 2mx3m~3mx4m 내외의 가정집 형태 공간 다수 • 체험이나 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 적합 • 시설의 일일 평균 이용자 10~30명 내외 	
아동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세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아동 시설 또는 아동 전용 시설은 아니나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타 유형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6~7세 사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 돌봄을 위한 시설 또는 학급 포함(시설 특성 상 6세 미만 유아가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유형 시설(어린이 병원 또는 병동, 대안학교의 아동·초등부, 장애인 시설, 일반 유형 시설 등) 포함 • 시설별로 공간, 운영방식, 운영자 지원의 편차가 크므로 프로그램 공개 시 최소한의 공간, 진행 조건 제시 필요 	

방문처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진행 장소
청소년 유형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공간(면적, 높이 등) 및 시설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비 필요 •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 강당, 강의실 - 필요 시 야외공간 활용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공간(면적, 높이 등) 및 시설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비 필요 •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인원, 연령, 특성 다양 • 학교별 보유 시설 공간 규모 차이가 클 수 있음 	
학교밖 청소년시설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당 평균 이용 청소년 20~50명 내외 <p>〈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중·고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당 평균 이용 청소년 50~100명 내외 • 시설마다 진행 공간 규모의 차이가 클 수 있음 <p>〈방과 후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 연령, 특성, 참여 인원 등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령 : 중등1~3학년 / 초등 고학년+중등1~3학년 - 참여인원 : 최소 15명~60명 <p>〈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200명 규모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 필요(중학교 비중이 높은 편) <p>※ 프로그램 내용 및 유치 목적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를 위한 경우, 아동 기타 시설 유형으로 진행</p>	
청소년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세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 시설 또는 청소년 전용 시설은 아니나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타 유형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포함 •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유형 시설(병원, 장애인시설, 탈북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교정 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일반 유형 시설 등) 포함 	
노년 유형		
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경로문화센터(경로당), 노인회관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 해당 • 노인복지관의 경우 강당 등 공연, 전시 활용 공간 보유 • 노년 계층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 탈피 필요 	- 강당, 강의실 - 필요 시 야외공간 활용

방문처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진행 장소
	(현대 노년층의 예술향유 수준 및 취향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요망)	
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주 이용자를 감안,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노년 계층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 탈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다목적실 - 로비, 정원 등
노년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세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노인 시설 또는 노인 전용 시설은 아니나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타 유형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 요양병원 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유형 시설(병원, 일반 유형 시설, 복지관 등) 포함 	-
장애인 유형		
장애인 특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층 고려 - 특수학교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초,중,고교)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관리자의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기획 및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강의실 - 필요 시 야외공간 활용
장애인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층 고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20대~60대)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관리자의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기획 및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장애인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세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 시설 또는 장애인 전용 시설은 아니나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타 유형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 재활병원 및 재활 병동 포함 • 장애인공동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 등 포함 •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교육지원센터 등 장애 유형별 시설 포함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유형 시설(일반 학교,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유형 등) 포함 • 시설별로 공간, 운영방식, 시설 측 지원의 편차가 크므로 프로그램 공개 시 최소한의 공간, 진행 조건 제시 필요 	-
특수 유형		
교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등 포함 • 방문처 특성 상 프로그램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시설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시설당 평균 인원 200명 내외 	- 실내 강당 등

방문처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 사항	진행 장소
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격·오지에 위치하며, 군부대 사정(훈련, 긴급출동 등)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잦음 • 주요 연령층과 성별은 20대 남성이나 일부 장교, 부사관은 성별, 연령대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내 식당, 강당, 연병장 등
일반 유형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내 이동, 행사 참여가 가능한 정도의 경증 환자와 보호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강당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참여자, 진행 방법 등 병원 측과 면밀한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활용 - 병원 내 정원, 주차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등 공연, 전시 가능 공간 보유 • 복지관 이용자, 주 참여자 사전 파악 필요 • 아동 관객부터 가족 단위까지 관객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강의실 - 필요 시 야외 공간 활용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예술단체의 다문화 감수성 필요 • 아동부터 가족 단위까지 관객 다양 • 시설당 평균 일일 이용자 50명 내외, 센터마다 공간 규모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강의실 - 필요 시 야외공간 활용
임대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영구/50년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및 기타 민간 임대 주택 • 전 연령층을 고려한 기획 필요 • 야외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권장 • 영구임대아파트 경우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공원, 주차장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산업단지 내 본부건물 로비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북한이탈주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하나재단 산하 권역별 하나센터 • 공공/민간 정착·자립 지원시설 포함 • (정착지원)대안학교, 복지 단체 및 시설 포함 	
일반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세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설 또는 일반 대상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타 유형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 특정 연령, 지적·신체적 능력의 제한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두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저소득층지원시설(전국자활센터 등), 노숙자복지시설(노숙자보호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디딤센터 등) 포함 • 국내 외국인 지원 시설(권역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 및 이주민 가구 지원시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센터, 외국인보호소 등) 포함 • 경찰, 소방 공무원 등 특수한 근무 형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술향유에 제약이 많은 직종의 직장 포함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대유형	세부 유형	문의처
I. 아동	① 아동양육시설	061-900-2253
	② 초등학교	061-900-2247, 2258
	③ 지역아동센터	061-900-2253
	④ 아동 기타 시설	061-900-2253
II. 청소년	⑤ 중학교	061-900-2254, 2261
	⑥ 고등학교	061-900-2254, 2261
	⑦ 대안학교	061-900-2254
	⑧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	061-900-2261
	⑨ 청소년 기타 시설	061-900-2254
III. 노년	⑩ 노인복지관	061-900-2251
	⑪ 요양병원	061-900-2251
	⑫ 노년 기타 시설	061-900-2251
IV. 장애인	⑬ 장애인 특수학교	061-900-2255
	⑭ 장애인 복지관	061-900-2255
	⑮ 장애인 기타 시설	061-900-2255
V. 특수	⑯ 교정시설	061-900-2245
	⑰ 군부대	061-900-2245
VI. 일반	⑱ 병원	061-900-2262
	⑲ 종합사회복지관	061-900-2246
	⑳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900-2246
	㉑ 임대아파트	061-900-2262
	㉒ 산업단지	061-900-2246
	㉓ 북한이탈주민 시설	061-900-2262
	㉔ 일반 기타 시설	061-900-2262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동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영유아,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발굴로 예술에 대한 향유와 미래 관객 개발에 대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 특정 세대를 위한 맞춤형 예술작품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 관객들에게 창작활성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작품을 지원합니다.

1. 사업목적

- 작품의 향유 대상이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인 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특정 연령층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우수 작품 발굴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분야의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향유자로 하는 작품 발표 지원

- **신청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세부 자격기준**
 -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 작품 발표 형태 : 전시, 공연, 발간(발간은 그림책에 한함)
- **지원내용**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제작비 및 발표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 **2024년 총 지원예산** : 980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보조금
그림책 발간	1천만원~3천만원
전시	3천만원~5천만원
공연·복합장르	3천만원~7천만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이 2024년도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보조금 외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필수
- 보조사업 단체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
- 선정된 예술가를 위해 마련된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교류 네트워킹, 모니터링 평가, 성과관리 공유회 등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결과는 다음 심의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예술적 우수성 및 기대효과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완성도 있는 창작물의 발표인가? • 작품의 소재가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특정 연령층에게 적합하며, 참신하고도 흥미로운가?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이 향후 우수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관객(독자) 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을 섭외하고 구성하였으며, 작품 규모와 관객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표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사업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사업 수행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기존 활동 내용(경력, 실적)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해당시) 영유아돌봄비 (해당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02-3668-0013 / 0056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참고]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정 2005.9.2.
 개정 2006.10.27.
 개정 2011.9.23.
 개정 2013.7.1.
 개정 2015.12.24.
 전면개정 2017.7.14.
 개정 2018.9.20.
 개정 2019.3.4.
 전면개정 2019.7.26.
 개정 2020.4.28.
 개정 2021.3.12.
 개정 202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 적정한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2.〉

1. “보조금”이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9. “중복수급”이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한다.(단,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개별 적용은 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이란 위원회가 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공고, 지원신청, 지원심의, 결과보고(정산 및 실적보고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위원회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13.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4.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6.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9.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20. “업무대행자”란 위원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원심의위원회”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3.07.0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대상) 보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과 위원회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신설 2023.07.04.>
2. 부정수급 실태점검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위원장이 정한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기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위원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8.> <개정 2023.07.04.>

제6조(보조금시스템 이용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공지 또는 안내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시스템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7.04.>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1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제7조(보조사업의 집행계획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유형별 예산액과 기타 사업비 등 세부집행계획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8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3.12.>

⑤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동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4.28.>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의 중단등의 처분을 받아 중단·배제 기간중인 경우 <신설 2023.07.04.>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위원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② 위원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신청 안내 및 사업자 공모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 언론매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신청 자격 또는 대상자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심의평가의 기준
 7. 그 밖에 위원장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제10조(보조사업자 정시공모 시기) 위원회는 매년 정시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직전 연도의 10월 말까지 보조금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위원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제11조의2(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위원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관계기관 및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위원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계기관 및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위원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4.>

제12조(지원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3.10.>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사업신청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지원심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③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심의의 운영은 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과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다.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 조건) ① 위원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개정 2021.3.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개정 2023.07.04.>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개정 2023.07.04.>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7.04.>
 - 자. 단체 또는 대표자가 표절,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다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사업 참여인력이 없는 1인 보조사업자,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7.04.>

- ② 위원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및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개정 2020.4.28.><개정 2021.3.12.>
- ③ <삭제 2023.07.04.>
-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⑤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 ⑥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로,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23.07.04.>

제14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별지2 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3개월 전(국제교류 등 특정사업의 경우 최대 6개월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04.>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 ③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또는 선행조건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

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 ④ 위원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약기관에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약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 또는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7.04.>
-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3. 그 밖에 위원장이 승인한 사항
-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사업의 포기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비추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포기를 보조금 교부 후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지원심의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유

형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사업포기일로부터 1년간 보조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7.04.>

-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예산 편성) ①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1. 모든 항목을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비목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 2. 보조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위원회의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용도나 산출근거로 편성 금지
 - 3. 출장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및 지급 금지
 - 4.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연구 결과의 보고서 간행,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만 보조 가능
- ②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2.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
 - 3.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제19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자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무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해당금액 이체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내용을 검토한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07.04.>

제21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제2호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7.0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3.07.04.>

제21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예탁기관이 보조사업 재원 비율에 따라 배분한 부수수익에 대해 지급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위원회가 지급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8.>

제22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단체(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기간 중 발생된 수익금을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

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 <개정 2023.07.04.>

제24조(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8.>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4.>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23.07.04.>

제2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3.12.〉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개정 2023.07.04.〉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다만,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23.07.04.〉

제27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보조비목 내에서의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예외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지원심의에서 적용한 보조금 배정기준에 따라 당초 결정하였던 지원금액을 축소·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도중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속히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대표자변경 신청을 한 후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으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0조(보조사업 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신설 2020.4.28.>
 -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성폭력 발생사업 또는 성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신설 2021.3.12.>
- ③ 위원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4.>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07.04.>
 - ⑤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부정수급 확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의 장(이하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8.><개정 2021.3.12.>
 - ⑥ 위원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8.> <개정 2023.07.04.>
 - ⑦ 위원장은 제4항의 결과 해당 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3.12.> <개정 2023.07.04.>
 - ⑦ <삭제 2023.07.04.>

제31조(보조사업의 수행 요구)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제44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신설 2021.3.10.>
-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이월과 재이월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의 이월을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20.4.2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23.07.04.>
- ②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보조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 ③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3.07.04.>

제35조(집행잔액 반납 등) ① 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반납해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자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

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실적보고서 접수 후 신속히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8.>
- ⑤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보조사업자는 예약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약기관으로 하여금 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⑧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⑨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3.07.04.>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4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신설 2023.07.04.>

제37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이 3억원 미만이라도 사업운영 관리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제1항의 검증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38조(검증기관의 책임) 위원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본 규정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 동안 제한

제39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지침」으로 정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40조(위원회 로고 명시 등) ①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으로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위원회의 로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1.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구 명시
 2.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0000년도 문예진흥기금(또는 사업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② 제1항의 위원회 로고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CI를 내려받아 홍보물과 인쇄물에 사용한다. <개정 2021.3.12.>
- 위원회 로고 다운 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 CI소개 - CI다운로드

제41조(성과측정 및 평가의 업무협조 등) ①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중에서 위원장이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아코예술키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제42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4.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4.28.>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통장을 사업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사업점검단) 위원장은 제30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점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신설 2021.3.10.>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위원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조금의 반환) ①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반환 명령을 한 날(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최종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4.>
- ④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신설 2021.3.10.>

제46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개정 2021.3.10.> ① 위원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그 밖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원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는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10.〉〈개정 2023.07.04.〉

② 제 1항은 보조금 수령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1.3.10.〉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0.〉

제4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결정절차 및 처분은 문체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4.28.〉〈개정 2021.3.10.〉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49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문체부 지침에 따른다.

제50조(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삭제 2023.07.04.〉

- ② 중앙관서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위원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04.〉
-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이 확인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1조(부정수급 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신설 2020.4.28.〉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52조(정보공시) ①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시를 위한 세부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침」으로 정한다.

제5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3 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7.04.>

③ 위원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0

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원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4.>

- ⑤ 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07.04.>

제54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위원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4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신고 포상금 지급) 위원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과 결정절차 등은 문체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3.10.>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 절차 진행된 2017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 절차가 진행된 2018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절차가 진행된 2021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절차가 진행된 2023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제1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별표 제2호]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2조 관련)

[별표 제3호] <삭제 2020.4.28.>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동의서
<개정 2023.07.04.>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개정 2023.07.04.>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설 2021.02.24.>

[별지 제7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지원신청시) <개정 2023.07.0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교부신청시) <개정 2023.07.04.>

[별지 제8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예시)

[별표 제1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세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게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게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 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p>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p>9. 공고료 및 광고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p>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p>
		<p>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p>
		<p>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p>
	공공요금 및 제세 (02)	<p>1. 공공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p>2. 제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p>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p> <p>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p> <p>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p>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p> <p>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p>
여비 (220)	국내여비 (01)	<p>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p> <p>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지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 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ㄹ과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 주관부서와 협의 후 편성 가능한 보조세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5. 직급보조비
운영비 (210)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체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체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로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약,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 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민간 이전 (320)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전출금 (610)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반환금 등(710)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별표 제2호]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1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개정 2023.07.0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 하단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등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개정 2023.07.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신자 ○○○(보조사업자)

(경유)

제목 (세세세부사업명) 교부결정통지서

1. (세세세부사업명)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단위사업 : NCAS 단위사업

나. 내역사업 : NCAS 세세세부사업명

다. 보조 사업자 :

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교부신청 사업명 :

마. 교부결정내역

○ 지원 결정액 :

○ 교부요청액 :

○ 기 교부액 :

○ 금회 교부액 :

○ 입금처

- 예금주 : 한국재정정보원

- 은행 : 하나은행

- 계좌번호 : 17591002238205 (입금식별번호 \$\$\$\$)

○ 지급(예정)일 : 2023-**-**

※ 지급일은 사무처 내부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자. 단체 또는 대표자가 표절,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문예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협조자

일상감사 결재자

시행

접수

우 58326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40 (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http://www.arko.or.kr>

전화 061-900-2161 팩스 02-760-4718 / bongsoo@arko.or.kr /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한 세상

붙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아래 내용은 사업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법, 예산및기금은
 용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운영관리규정을 반영하여 사업에 맞게 수정·
 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위원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 등은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 등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와는 거래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해야만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위원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사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1)	명칭 면적(m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설 2021.3.10.>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지원신청시) <개정 2023.07.04.>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전한 예술현장의 환경조성을 위해 본 단체(개인)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교육 등)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조직 내 문화예술계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3.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공모선정 취소 및 향후 예술위원회 사업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개인)명 :

대표자 성명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교부신청시) <개정 2023.07.0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_____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 개인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전원(프리랜서 포함)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양식은 보조금 교부 시 제공)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른 조치를 준용하여야 함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개인)명 :

대표자 성명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예시) <개정 2023.07.0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			

강사 확인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국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보는

아트누리에서



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http://artnuri.kr)

●● 매일 새로 올라온 지원사업을 **한눈에**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나에게 꼭 맞는 지원사업을
메일과 문자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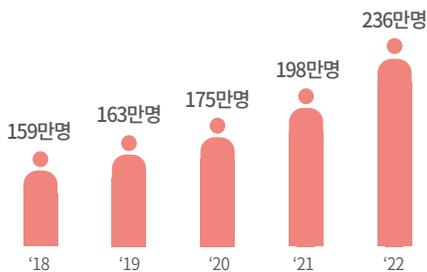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지금,

2023년 한 해, 약 267만 명의 이웃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의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새로운 경험과 기초예술분야 이용활성화를 위해 **티켓 예매처에 문화누리카드 할인권종을 등록**해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급자 수 현황



최근 5년간
예산 증액 현황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문화여가 관련 정보와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80.4점**
(전년대비 2.5점 ↑)

“문화여가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다” **79.0점**
(전년대비 1.6점 ↑)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 중 -

예술가(예술단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개인예술인 혹은 예술단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되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복지시설)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가맹점 등록 가능 대상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개인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사업자등록증 필수)

가맹점 등록 방법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사용하기 > 가맹점 등록 신청

※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결제를 위한 결제단말기가 필요합니다.

※ 결제단말기가 없는 경우, 이노페이(web.innopay.co.kr)를 통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노페이(INNOPAY)는 모바일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서비스 업체이며,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 공지사항 참고("이노페이" 검색)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안내 및 홍보 지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로 선정된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사용하기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에서 소개되며,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복지시설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관처(광역문화재단 등)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티켓에 객석을 기부해주세요.

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감수성,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회원들에게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입니다.



기부혜택

- 나눔티켓 판매와 예매에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드립니다.
- 나눔티켓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과 전시를 무료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객석나눔 시에는 기부한 티켓의 현물시가 및 장부가액의 70%까지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하기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나눔티켓 참여하기 ▶ 나눔티켓 홈페이지 www.nanumticket.or.kr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나눔티켓 관련 문의 ▶ 1544-3405



2024 아티스트

현장예술인력지원 잡마켓

2024년 1분기
KIO
잡마켓

HRD.ARKO.OR.KR



예술계 유일 채용 직접 연계 채용박람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연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잡마켓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계 채용정보가 제공되며, 실시간 채용 상담 및
화상 면접,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채용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4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 무대기술 인턴
- 공연예술 전문인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ARTS
ARCHIVE

아르코예술기록원

이용 안내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기록을 수집·생산·보존하고 있으며, 예술분야 전문지와 자료를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연구·창작·학습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료별 열람 가능한 장소 및 방법

구분	소장 및 서비스 자료		열람 가능한 장소 및 방법	
			실물자료 또는 구독자료	디지털자료
수집 기록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예술정책 분야 컬렉션 117개		(실물) 사전예약 후 방문 → 원내열람	(온라인) 원내/원격열람 daarts.or.kr
* 일부 수집기록은 원내에서만 열람 가능				
생산 기록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책자·영상 327편 공연영상(공연촬영영상) 2,184편		(실물) 원내열람	(온라인) 원내/원격열람 daarts.or.kr
* 공연 전체영상은 원내에서만 열람 가능				
구독 자료	국내예술전문지	시각예술 12종	(실물) 원내열람	서비스 미제공
		연극 7종		
		무용 4종		
		음악 7종		
	국내학술DB	국회도서관DB	(온라인DB) 원내열람 artsarchive.arko.or.kr	
		국립중앙도서관DB		
DBPIA / KISS				
해외예술DB	EBSCO			
	ProQuest			
	NAXOS Music Library			
구입 자료	예술분야 도서, 음반 등 단행본 약 6만 건		(실물) 원내열람	서비스 미제공

*** 본원에서는 디지털화된 수집·생산기록과 구독자료만 열람 가능합니다.**

누리집 내용과 기능

누리집	내용과 기능
artsarchive.arko.or.kr	아르코예술기록원 대표 누리집입니다. 자료검색, 수집 또는 생산 기록물의 열람 예약, 구독하는 DB의 열람을 지원합니다.
daarts.or.kr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수집, 생산한 기록물 중에서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의 온라인 열람을 지원합니다. * 본원이나 본원에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 유의

위치 및 운영시간

- **본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층 / 평일 10:00~17:3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 **분원** 대학로예술극장 1층 / 평일 10:00~17:3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 **대표전화 및 이메일** (본원) 02-760-4750 (분원) 02-760-4596 / artsarchive@arko.or.kr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이끄는
후원



예술나무운동

예술나무 기부금 지원사업

- 조건부(지정)기부금 지원사업
-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 ARKO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예술나무 확산 및 매개사업

- 예술나무 캠페인
- 문화예술후원매개자 양성사업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 문화예술후원매개 기획사업



투명성



공신력



수수료 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수료 1원 없이 100% 예술현장에 전달하는

기부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세제혜택



편의성



네트워크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제혜택

개인 후원금액의 15%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법인 후원금 전액 손금산입(소득금액 10% 한도 내)

문화예술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예술나무 후원금은 예술창작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술나무 약정 및 납부안내

예술나무 후원(정기/일시) 정기후원 월 3천 원부터 일시후원 1만 원부터
QR코드 접속 후 약정신청 문의 02-760-4785/4787 메일 artistree@arko.or.kr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

- 후원 프로그램 초대
- 예술나무 소식지 및 자료 제공
-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02-760-4784 ※ 후원 예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융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최저 50만원~ 최고 700만원 이내	최고 1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금리	연 2.5%	연 1.95%
	※ 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상환방법	· 3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2년 만기일시 상환 ※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대출신청

온라인: www.artloan.kr

문의 및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콜센터

T. 02-3668-0238~9 E. artloan@kawf.kr

H. www.artloan.kr

※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